



“님을 위한 행진곡” 학술세미나

주최: 광주시민단체협의회  518 기념재단 후원:  광주광역시



행사진행순서

개회

사회자: 이행봉(부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장)

인사말: 최영태(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격려사: 조영표(광주광역시의회 의장)

1부

발표 1: 『5·18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에 관한 대법원 판결 분석』

민병로 (전남대 법학과)

발표 2: 『'님을 위한 행진곡'을 위하여』

정근식 (서울대 사회학과)

2부 종합토론

<토론자>

- 노진철 (경북대 사회학과, 교수)
- 최정기 (전남대 5·18연구소, 교수)
- 김선화 (국회입법조사처, 박사)
- 박상혁 (법무법인 창조, 변호사)

3부

5·18당시 방송관련자 조사결과 발표

:5·18기념재단



목차

행사진행순서 · 03

발표 1: 『5·18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에 관한 대법원 판결 분석』 · 07

민병로 (전남대 법학과)

발표 2: 『‘님을 위한 행진곡’을 위하여』 · 41

정근식 (서울대 사회학과)

토론문 : ‘님을 위한 행진곡’의 상징정치 · 57

노진철 (경북대 사회학과, 교수)

토론문 : 5·18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 관련 토론문 · 65

김선화 (국회입법조사처, 박사)



발표 1

5·18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에 관한 대법원 판결 분석

민병로 (전남대 법학과)

5·18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에 관한 대법원 판결 분석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민 병로

<목차>

1. 문제제기
2. 5·18특별법 등 제정경위
3. 적용죄명과 형량
4. 대법원 판결의 쟁점
 - (1)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 (2)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
 - (3) 내란죄의 성립 여부
 - (4) 내란목적살인죄의 성립 여부
 - (5) 위법성조각사유, 책임조각사유 여부
 - (6) 5·17비상계엄 전국확대 등의 균형법상 반란죄 여부
5. 대법원 판결의 의의와 한계
 - (1)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할 수 있음
 - (2) 시위진압행위가 국헌문란에 해당하여 내란죄가 될 수 있음
 - (3) 발포명령 및 발포책임자에 관하여
 - (4) 정호용, 황영시의 내란목적살인죄에 관하여
 - (5) 12·12쿠데타와 관련한 박준병 피고인의 반란죄 무죄선고에 관하여
6. 결론

1. 문제제기

12.12쿠데타에 대한 기소유예처분(1994년 말) → 5.18에 대한 공소권없음 처분(1995년) →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정(1995년 12월) → 5.18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1996년 2월) → 12.12쿠데타와 5.18민중항쟁 관련자 기소(1996년 1월 18일) → 제1심 서울지방법원 선고(1996. 8. 26.) → 제2심 서울고등법원 선고(1996. 12. 16.) → 대법원 선고(1997. 4. 17.)

○ 5·18¹⁾관련단체나 관계자들의 광주문제해결 5대 원칙인 ①진상규명, ②책

1) 5·18이란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이 12·12군사쿠데타를 일으켜 군부를 장악한 뒤, 정권 찬탈을 위한 내란행위의 일환으로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한 1980년 5월 17일 자정에서 27일 새벽까지 광주를 중심으로 한 전라남도 시민들이 저항한 사건을 말함. 한편, 12·12란 1979년 10월 26일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함으로써 유신체제가 붕괴되면서, 1979년 12월

임자처벌, ③명예회복, ④배상, ⑤ 정신계승 중에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이 1997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폭동적 시위진압행위가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보고 책임자처벌로 귀결되었는지
- 대법원이 간접정범의 법리에 의해 내란죄를 인정한 것이 5·18발포책임자를 누구인지를 특정했다고 볼 수 있는지
- 대법원 판결의 의의와 한계가 무엇인지

2. 5·18특별법의 제정 경위

(1) 1987년 6월시민항쟁과 1993년 문민정부출범

- 5공화국출범이후 광주학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이 끊임없이 요구되었고, 1987년 6월 시민항쟁에 의해 직선제 개헌안이 통과됨. 노태우는 집권에 성공하였지만 1988년 하반기 국회에서 5·18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위원회가 열리게 됨.
- 1993년 김영삼의 문민정부가 출범. 검찰은 1994년 말에 12·12쿠데타에 대해서는 군형법상 반란죄를 인정하면서도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1995년 5·18에 대해서는 내란적 요소를 인정하면서도 공소시효가 완료되었음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처분을 함.

(2) 국민들의 기소촉구운동과 문민정부의 역사바로세우기

- 검찰의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국민들은 전국적으로 집회와 시위, 성명서 발표를 통해 기소를 촉구하였고, 전두환과 노태우의 비자금 사건이 폭로됨.

12일 전두환과 노태우 등 ‘하나회’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세력이 일으킨 군사반란을 말함 (위키백과 등).

- 김영삼 정부는 특별법의 제정과 재수사 및 기소를 명하였음. 이에 따라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2개의 특별법을 제정함.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1995.12.21.제정)>
 제2조(공소시효의 정지) ①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헌정질서파괴범죄 행위에 대하여 국가의 소추권행사에 장애 사유가 존재한 기간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 것으로 본다.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별법(1995.12.21.제정)>
 제3조(공소시효의 적용배제) 다음 각호의 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내지 제253조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 내지 제295조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2조의 헌정질서파괴범죄
 2. 형법 제250조의 죄로서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집단살해에 해당하는 범죄

- 5·18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헌재 1996. 2. 16. 96헌가2, 96헌마7,13]
 개별사건법률은 원칙적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자의적 규정이라는 강한 의심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지만, 개별법률금지의 원칙이 법률제정에 있어서 입법자가 평등원칙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규범이 개별사건법률에 해당한다 하여 곧바로 위헌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차별적 규율이 합리적인 이유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합헌적일 수 있다. 이른바 12·12 및 5·18 사건의 경우 그 이전에 있었던 다른 헌정질서파괴범죄와 비교해 보면,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에 관한 논의가 아직 진행중이고, 집권과정에서의 불법적 요소나 올바른 헌정사의 정립을 위한 과거청산의 요청에 미루어 볼 때 비록 특별법이 개별사건법률이라고 하더라도 입법을 정당화할 수 있는 공익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 검찰은 위 입법조치에 따라 1996. 1. 18. 12·12쿠데타와 5·18민중항쟁 관련자를 기소함. → 12·12에 대하여는 균형법상의 반란죄, 5·18에 대하여는 내란 및 내란목적살인죄로 처벌됨. →이들에 대한 사면은 김대중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1997년 당시 대통령이었던 김영삼에게 건의하여 사면, 복권됨.

3. 적용죄명과 형량

	이름 (12.12.부터 5.18 당시직책)	적용죄명	판결(유, 무죄)	형량
1	전두환 (합수본부장, 중앙정보부장서리, 국가보위비대위상임위원장)	가, 반란수괴 라, 불법진퇴 마,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 바, 상관살해 사, 상관살해미수 아, 초병살해 자, 내란수괴 타, 내란목적살인 파, 특가법위반(뇌물)	전부 유죄	1심-사형 2,3심-무기징역
2	노태우 (9사단장, 수경사령관, 보안사령관)	다, 반란중요임무종사 라, 불법진퇴 마,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 바, 상관살해 사, 상관살해미수 아, 초병살해 카, 내란중요임무종사 파, 특가법위반(뇌물)	전부 유죄	1심-징역22년6월 2,3심-징역17년
3	유학성 (국방부군수차관보, 제3군사령관)	나, 반란모의참여 다, 반란중요임무종사 차, 내란모의참여	전부 유죄	1심-징역8년 2심-징역6년 3심-공소기각 (재판중 사망)
4	황영시 (1군단장, 육군참모차장)	다, 반란중요임무종사 카, 내란중요임무종사 타, 내란목적살인	1심-내란목적살인은 무죄 2심-내란목적살인은 유죄 3심-내란목적살인은 유죄	1심-징역10년 2,3심-징역8년
5	차규헌 (수도군단장육군사관학교장)	나, 반란모의참여 다, 반란중요임무종사 차, 내란모의참여	전부 유죄	1심-징역7년 2,3심-징역3년6월
6	박준병 (육본인사참모부장)	다, 반란중요임무종사	1심-반란중요임무종사 무죄 2심-반란중요임무종사 무죄 3심-반란중요임무종사 무죄	x

7	최세창 (제3공수여단장, 20사단장)	다, 반란중요임무종사	전부 유죄	1심-징역8년 2,3심-징역5년
8	장세동 (30경비단장, 3공수여단장)	다, 반란중요임무종사	전부 유죄	1심-징역7년 2,3심-징역3년6월
9	허화평 (보안사령관비서실장)	다, 반란중요임무종사 카, 내란중요임무종사	전부 유죄	1심-징역10년 2,3심-징역8년
10	허삼수 (보안사인사처장)	다, 반란중요임무종사 카, 내란중요임무종사	전부 유죄	1심-징역8년 2,3심-징역6년
11	이학봉 (보안사대공처대공2과장, 합수부수사1국장, 보안사대공처장)	다, 반란중요임무종사 카, 내란중요임무종사	전부 유죄	1심-징역10년 2,3심-징역8년
12	박종규 (3공수여단15대대장, 30사단91연대장)	다, 반란중요임무종사	전부 유죄	1심-징역4년 2,3심-징역3년6월
13	신윤희 (수경사헌병단장, 육군헌병감)	다, 반란중요임무종사	전부 유죄	1심-징역4년 2,3심-징역3년6월
14	이희성 (중앙정보부장서리, 육군참모총장)	다, 반란중요임무종사 카, 내란중요임무종사 타, 내란목적살인	전부 유죄	1심-징역8년 2,3심-징역7년
15	주영복 (국방부장관)	다, 반란중요임무종사 카, 내란중요임무종사 타, 내란목적살인	전부 유죄	1,2,3심-징역7년
16	정호용 (특전사령관)	다, 반란중요임무종사 카, 내란중요임무종사 타, 내란목적살인 하, 특가범위반(뇌물)방조	1심-내란목적살인은 무죄 2심-내란목적살인은 유죄 3심-내란목적살인은 유죄	1심-징역10년 2,3심-징역7년

4. 대법원 판결의 쟁점

(1)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할 수 있는지

- 피고인들이 이 사건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폭력으로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의 권능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정권을 장악한 후 국민투표를 거쳐 헌법을 개정하고 개정된 헌법에 따라 국가를 통치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새로운 법질서를 수립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음
- 우리나라의 헌법질서 아래에서는 헌법에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력에 의하여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는 것임
- 헌법 개정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를 불문에 붙이기로 하는 어떠한 명시적인 합의도 이루어진 바가 없었으므로, 특별법이 제정되고 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이 내려진 이상, 피고인들은 그들의 정권장악에도 불구하고, 결코, 새로운 법질서의 수립이라는 이유나 국민의 합의를 내세워 그 형사책임을 면할 수는 없음

(2)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

- 5·18특별법 제2조는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별법 제2조의 헌정질서파괴범죄 행위에 대하여는 국가의 소추권행사에 장애 사유가 존재한 기간에는 그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 노태우의 대통령 임기만료기간인 1993. 2. 24.까지는 그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헌정질서파괴범죄에 대하여는 1993. 2. 25.부터 그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임
- 이 사건 헌정질서파괴범죄는 모두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그 공소시효의 기간이 15년임

- 그 중 이른바 12·12군사반란에 관련된 부분의 공소는 1996. 2. 28.에, 이른바 5·18내란에 관련된 부분의 공소는 1996. 1. 23.과 1996. 2. 7.에 각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모두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함²⁾

(3) 내란죄³⁾의 성립 여부

가. 국헌문란의 목적⁴⁾

① 5·17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

- 신군부는 1980년 5월 초순경부터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 비상대책기구 등을 골자로 한 이른바 시국수습방안 등을 마련 → 그 계획에 따라 전국 지휘관 회의에서 5월 17일 비상계엄 전국 확대를 결의 →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강압하고 병기를 휴대한 병력으로 국무회의장을 포위하고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하여 국무위원들을 강압

② 국가보위비상대책상임위원회

- 비상계엄 하에서 중요국정에 관한 국무총리의 통할권과 이에 대한 국무회의의 심의권을 배제함으로써 헌법기관인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권능행사를 강압에 의하여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이므로 국헌문란에 해당함
-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헌법기관인 행정 각 부와 대통령을 무력화시킨 것은 행정에 관한 대통령과 국무회의의 권능행사를 강압에

2) 한인섭에 의하면, 특별법에 의하지 않더라도 1심, 2심, 3심이 비상계엄이 지속되어 정상적인 국정 활동이 마비되었던 기간(1980. 5. 17~1981. 1. 24)까지는 적어도 내란행위의 진행된 것으로 보고, 비상계엄이 해제된 1981년 1월 24일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검찰의 기소시점인 1996년 1월 18일로부터 공소시효 만15년 6일 못 미친다는 견해가 있다. 한인섭, 국가폭력에 대한 법적 책임 및 피해회복, 서울대학교 법학 제43권 제2호, (2002년 6월), 204-205면 참조.

3) 내란죄(제87조) 국토를 침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참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4)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1.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의하여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이므로 역시 국헌문란에 해당됨.

③ 시위진압행위(강경진압과 살해행위)가 국헌문란에 해당하는지?

• 형법 제91조의 국헌문란의 정의

-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의 소멸시키는 것.
-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 항소심(예시설) : 주권자인 국민의 결집을 헌법기관보다 더 중요한 헌법 수호기관으로 봄 →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수호를 위하여 결집한 것을 강압으로 분쇄한 행위는 헌법기관을 강압으로 분쇄한 것과 마찬가지로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봄
- 대법원(열거설) : 헌법상 아무런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헌법의 수호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는 것만으로 헌법수호를 목적으로 이룬 시위국민들을 가리켜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이라 할 수는 없음. 따라서 헌법수호를 위하여 시위하는 국민의 결집을 헌법기관으로 본 원심의 조처는 유추해석에 해당하여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 판시함
- 그러나 광주시민들의 시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행위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난폭하게 진압함으로써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에 대하여 보다 강한 위협을 가하여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으로 보아야 함으로 국헌문란에 해당된다고 봄

나. 시위진압의 폭동성

- 피고인들이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러한 목적이 없는 계엄군을 이용하여 난폭하게 시위를 진압한 행위는 피고인들이 간접정법의 방법으로 내란죄 등을 실행한 것으로 봄(내란죄 및 내란목적 살인죄의 판단은 정당함)

다. 내란죄의 종료시점

- 항소심 : 계속범. 기존의 권력집단의 굴복만으로 내란이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이며 헌법제정권력인 국민이 내란집단에 굴복하지않고 저항하는 때에는 종료된 것이 아님. 대통령직선제 요구가 받아들여진 6·29 선언 시에 비로소 종료됨.
- 대법원 : 상태범.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는 일종의 협박행위로서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에 해당하므로, 그 비상계엄 자체가 해제되지 아니하는 한 전국계엄에서 지역계엄으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그 최초의 협박이 계속되고 있다할 수 있으므로 계엄이 해제된 1981. 1. 24에 내란행위가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함.

라. 간접정범의 형태로 내란죄가 성립하는지? (1,2,3심 모두 인정)

사실관계 : 1980. 5. 17. 21:42 중앙청에서 신현확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임시국무회의에서 주영복 국방부장관은 전국적으로 계엄법상 비상계엄선포가 가능한 전쟁 또는 전쟁에 준할 사변과 적의 포위공격이라는 상황이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단순히 북한의 동태와 전국적으로 확대된 소요상태 등을 감안할 때 비상계엄 전국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설명을 한 후 반대 토론 없이 8분만에 의결시키고(당시 중앙청 외곽에 군병력과 장갑차를 무장배치하고, 내부에도 수경사 소속 헌병 250명을 무장시켜 배치하여 국무위원들에게 위력을 보임) 최규하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23:40경 이규현 문화공보부장관이 24:00를 기해 비상계엄선포지역을 전국 일원으로 변경한다고 발표

- 내란죄의 경우에도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자가 그러한 목적이 없는 자를 이용하여 이를 실행할 수 있음
- 비상계엄 전국 확대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선포함으로써 외형상 적법하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에 의해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함
- 피고인들에 의하여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런 목적이 없는 대통령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간접정범의 방법으로 내란죄를 실행한 것으로 보아야 함

(4) 내란목적살인죄⁵⁾의 성립 여부

가. 내란죄와 내란목적살인죄의 구별

- 내란죄는 폭동을 수단으로 함, 이에 반해 내란목적 살인죄는 살인을 수단을 함. 따라서 내란의 실행과정에서 폭동행위에 수반하여 이루어진 살인행위는 내란행위 한 구성요소로서 내란행위에 흡수됨
- 살인이 내란의 와중에 폭동에 수반한 것이 아니라 살인 자체가 의도적으로 실행된 경우에는 내란목적 살인죄는 별죄를 구성함
- 광주재진입작전 수행으로 인해 피해자를 사망한 행위는 내란목적살인죄가 성립함(황영시, 주영복). 광주를 조속히 제압하지 않으면 시위가 다른 곳으로 확산되어 내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판단(즉, 광주재진입작전 자체는 내란의 폭동이 아님)

나. 발포행위의 내란목적살인죄 여부

1. 제1단계(최초발포)

- ① 최초 발포는 1980. 5. 20. 24:00 광주역 앞에서 3공수여단 12, 15대대 장교들이 시위대의 차량공격에 대응 발포하여 많은 광주시민들이 부상입음.
- ② 1980. 5. 21. 12:00. 전남대 앞에서 제3공수여단이 시위대에 발포하여 성명 불상 운전자 등이 총상으로 사망

2. 제2단계(자위권보유권천명⁶⁾부터 5.26까지)

1980. 5. 21. 13: 00. 전남도청앞에서 11공수여단 병력이 시위대를 향하여 10여분간 집단적으로 발포하여 박민환등이 사망. 이후 자위권발동지시를 하달 받은 제20사단 병력이 제한적 발포가 아닌 민가에도 무차별 사격함.

3. 제3단계(5.27.재진입작전)

1950. 5. 27. 제3공수여단 전남도청 후문에서 무차별 총격(광주재진입작전⁷⁾)

5) 내란목적살인죄(제88조) 국도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6) 자위권보유권천명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광주시민들의 이성회복과 질서유지를 당부하고 지난 5.18.에 발생한 광주지역의 난폭한 시위가 치안질서를 매우 어렵게 하고 있으며, 계엄군은 폭력으로 국내치안을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하여는 부득이 자위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을 경고합니다.”

7) 광주재진입작전(이른바 상무충정작전)계획은 1980.5.21. 경부터 육군본부에서 여러 번 논의를 거

① 제1단계(최초 발포부터 5.21 자위권보유천명 이전)

- 대법원은 5월 21일 오후 1시경 도청 앞 집단발포에 대해, 내란죄에 수반하는 행위로 보고 별도로 내란목적 살인죄는 인정하고 있지 않음

☞5. 21.도청 앞 집단발포에는 상부의 발포령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됨
- 21일 당시 전남매일 기자에 따르면 대치중이던 공수부대 지휘관은 상부에서 발포명령이 떨어졌는지 통신병에게 수시로 확인했고, 결국 오후 1시 발포명령이 떨어지자 집단발포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

- 5월 21일 전날 광주역 인근 사망자 발생 등으로 인해 도청 앞 시위 군중의 수가 급격히 불어나고 시위가 격렬해지자, 기존의 진압방식으로는 내란목적 즉 정권찬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한 내란집단의 수뇌부가 집단 발포하라는 지시를 했을 것으로 추정

☞따라서 상부의 발포명령을 토대로 하여 ‘의도적으로 이루어진 살인의 행위’는 내란행위에 단순히 수반하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별개의 내란목적살인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② 제2단계(1980.5.21. 자위권 보유천명 이후 5.26.까지의 발포)

- 자위권 보유의 의미가 무장시위대가 아닌 사람에게까지 발포해도 좋다는 발포명령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가 문제됨.

- 대법원은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고, 내란의 폭동행위에 수반하여 일어난 것으로 보아, 피고인(전두환, 황영시, 이희성 주영복, 정호영)이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는 계엄군을 도구로 이용하여 실행한 내란행위의 하나로 보아 내란죄로 흡수시킴. 발포책임자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명시하고 있지는 않음

☞자위권보유천명의 담화문의 내용상 광주시민들에게 군부의 자위를 위

친 후 최종적으로 피고인 이희성이 같은 달 25.오전에 김*명 작전참모부장에게 지시하여 육본작전 지침으로 완성한 것임. 이후 같은 날 13:15 국방부 육군회관에서 피고인 전두환, 황영시, 이희성, 주영복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같은 달 27.00:01 이후 이를 실시하기로 결정함.

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것은 광주시민들에 대한 발포를 예상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음

[참조] 1심은 자위권발동 및 계엄훈령의 내용을 실질적인 발포명령으로 봄

“위 계엄훈령 제11호 소정의 자위권발동의 방법에 따라 3회 이상 경고하고 하퇴부를 조준하여 사격하는 것이 실제로 불가능한 상황임을 잘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위권발동지시를 함으로써 그 때까지 자위권이 있는지도 잘 모르거나 자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발동을 망설이고 있던, 시위진압현장의 계엄군들로 하여금 위 자위권발동지시를 제한적이기는 하나 사실상의 발포명령으로 받아들여서 광주외곽도로 봉쇄작전 및 광주재진입작전시 자위권의 행사방법에 의거한 제한적인 발포가 아니라 민가에 대한 무차별사격, 검문소로 접근하는 시위대 탑승 차량에 대하여 정차의 요구를 하지도 아니한 채 발포하는 등의 살상행위를 자행하였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위 자위권발동지시는 실질적으로 발포명령이었다고 볼 것이어서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담화문 작성 과정에 참여한 자들을 발포책임자로 특정할 수 있을 것임

○ 대법원은 함께 하달한 계엄훈령 11호⁸⁾의 내용상 광주시민에 대한 직접적인 살인을 용인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봄

☞이는 단지 계엄훈령이 정당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판단한 것일 뿐이고, 현장에서 발포명령을 지시한 지휘관들은 오히려 이러한 내용을 전혀 지키지 않고 시민들에게 집단 발포했다는 점에서 계엄훈령 제11호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최소한 현장의 지휘관들은 내란목적살인죄의 책임을 지야 함

③ 제3단계 (광주재진입작전)

8) 항소심은 계엄훈령 11호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1980.5.21. 20:30 경 전교사령관을 통해 3개 공수여단과 20사단 등에 함께 하달한 계엄훈령 제11호도 자위권을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함에 있어 급박 부당한 위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부득이 실력을 행사하여 방위하는 권리’라고 정의하고, 자위권발동대상을 ‘무기,폭발물,화염병,흉기를 소지하고 건물이나 무기를 탈취, 점거, 파괴, 방화하고자 하는 자’에 한정하고, 자위권발동 시기는, ① 군부대, 경찰관서, 공공기관 및 국가 보안목표 등을 보호함에 있어 폭도들이 무기 또는 위험물을 사용 침투해 옴으로써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진압방법이 없을 경우와 ② 국민 또는 출동병력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함에 있어 그 정황이 급박할 경우 등으로 정하고, 자위권 발동 방법으로 ‘경고를 발하고 3회 이상 정지를 명할 것, 가능한 한 위협발사를 하여 해산시킬 것, 급박하더라도 생명에 지장이 없는 신체부위를 사격할 것(하퇴부), 선량한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유의할 것’ 등으로 되어 있어 이들의 취지를 무장시위대가 아닌 사람들에게까지 발포하여도 좋다고 한 것으로 볼 수는 도저히 없으며 이들을 그러한 취지로 해석하여야 할 다른 자료가 있는 것도 아니다.”

○ 대법원은 1980.5.27. 광주재진입작전의 작전명령에는 사실상 발포령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시. 대법원은 광주재진입작전을 실시하는 데에 저항 내지 장애가 되는 범위의 사람들을 살상하는 데는 내란의 목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직접 필요한 수단이라고 보아 전두환 등에 대해 내란목적 살인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함

☞ 다만 발포책임자와 그 과정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밝히지 않았으나, 광주재진입작전내용의 결정과정을 감안하여 볼 때, 당시 지휘체계에서 수괴의 역할을 담당한 전두환이라고 추정할 수 있음

		5.20.부터 21.집단발포까지	5.21.자위권보유천명 부터 5.26.까지	5.27. 재진입작전
발포령 존재여부	1심	없음	자위권발동 및 계엄훈령의 내용을 실질적인 발포명령으로 보았다	있음(광주재진입작전명령에 포함)
	2심	없음	없음	있음(광주재진입작전명령에 포함)
	대법원	없음	없음	있음(광주재진입작전명령에 포함) ⁹⁾
	비판	있음(최소한 5.21.도청앞 집단발포에는 상부의 발포령 있었을 것으로 추정)	있음(5.21. 19:30 자위권보유천명에는 포함된 것으로 해석 가능) ¹⁰⁾	-
내란목적 살인	대법원	내란죄에 흡수 (내란목적살인죄-무죄)	내란죄에 흡수 (내란목적살인죄-무죄)	내란죄와 별개 (내란목적살인죄-유죄)
	비판	발포령이 있었다고 본다면 내란목적살인죄로 처벌 가능	발포령이 있었다고 본다면 내란목적살인죄로 처벌 가능	-
발포책임 자	1심	판결문 명시 없음	판결문 명시 없음	판결문 명시 없음
	2심	판결문 명시 없음	판결문 명시 없음	판결문 명시 없음
	대법원	판결문 명시 없음	판결문 명시 없음	판결문 명시 없음
	비판	전두환 정호용 11공수여단장(현장책임자)	전두환 정호용 20사단장 3·7·11공수여단장	전두환 등으로 추정가능

다. 발포책임자는 누구인지

① 제1단계

대법원은 제1단계 발포책임자를 특정하지 않음.

☞ 제1단계에서의 발포에 대해서도 관련 증언을 토대로 할 때 신군부의 수뇌부에서 직접 발포명령을 내린 것으로 볼 수 있음

② 제2단계

제2단계에서도 대법원은 발포책임자를 특정하지 않음.

☞ 제2단계에서의 발포의 근거가 된 자위권발동을 결의한 자 중 전두환의 보안사 부하인 정도영이 참석하여 주도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 전두환이 배후에서 자위권 보유천명의 담화문 작성 및 발표에 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21일 16:35 경 국방부장관실에서 피고인 주영복 국방부장관, 진중채 2군사령관, 정도영 보안사 보안처장, 류복현 합참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위수령 제1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자위권을 발동하기로 결정하였다.
--

③ 제3단계

대법원은 광주재진입명령에 발포명령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

☞ 그러나 발포명령자를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발포행위에 따른 내란목적 살인죄의 책임자로 전두환, 이희성, 주영복, 황영시, 정호용이 처벌받은 점을 볼 때 이들을 발포책임자로 보았다고 할 수 있음.

(4) 균형법상 반란죄에 관하여

9) “재진입작전명령은 시위대의 무장상태 그리고 그 작전의 목표에 비추어 볼 때 시위대에 대한 사격을 전제하지 아니하고는 수행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므로, 그 실시명령에는 그 작전의 범위 내에서는 사람을 살해하여도 좋다는 발포명령이 들어 있었음이 분명하며 …”(대법원판결문 21쪽)

10) 대법원은 “피고인 전두환, 황영시, 이희성, 주영복, 정호용이 자위권 보유천명이나 자위권발동 지시에 관여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시위진압의 효과를 조속히 올리기 위하여 무장시위대가 아닌 사람들에게까지 발포하여도 좋다고 하는 이른바 ‘발포명령’이 위 피고인들의 지시에 의하여 육군본부로부터 광주의 계엄군에게 하달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라고 판시하였으나(대법원판결문 26쪽), 자위권보유천명은 1980. 5 21. 오후 1시 집단발포가 있는 후에 16:35 국방부장관실 회의를 거쳐 19:30 이희성이 방송을 통해 자위권보유천명을 하였고, 20:30 계엄군들에게 자위권발동 지시 및 실탄이 분배되어 이후 발포행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자위권에 따른 발포명령에 의한 행위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 대법원은 ① 1980. 5. 17.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를 전후하여 무장한 계엄군을 동원하여 학생, 정치인, 재야인사 등을 체포한 사실, ② 1980. 5. 17. 저녁 피고인 노태우가 피고인 전두환과 공모하여 비상계엄의 전국확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임시국무회의장에 소총 등으로 무장한 수경사의 병력을 배치한 사실, ③ 1980. 5. 17. 저녁 무렵부터 5. 18. 새벽까지 전국의 주요 보안목표에 무장한 계엄군을 배치한 사실, ④ 1980. 5. 18. 07:20경 피고인 노태우가 김영삼 당시 신민당총재의 가택에 소총 등을 휴대한 수경사의 헌병들을 배치하여 포위, 봉쇄한 사실, ⑤ 1980. 5. 18. 01:45경부터 무장한 제33사단 병력이 계엄군으로 국회의사당에 배치되어 이를 점거하면서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5. 20.경 일부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저지한 사실, ⑥ 광주에서의 시위를 진압하기 위하여 1980. 5. 18.경부터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증파하여 시위를 진압하고 광주시 외곽을 봉쇄한 후 광주재진입작전을 실시하여 도청 등을 점령한 사실 중,

○ 원심이 피고인 이희성, 주영복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위 ②, ⑤의 반란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피고인 이희성, 주영복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하였음), 위 ①, ③, ④, ⑥항의 사실에 대하여는 당시 최규하 대통령의 재가나 승인 혹은 묵인 아래 이루어진 것이어서 당시 국방부장관이었던 피고인 주영복과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인 피고인 이희성이 이 사건 내란과 반란에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최규하의 군통수권에 반항하는 행위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판결 41,42쪽).

○ 이에 대해 이용훈 대법관의 반대의견이 있음.

“여기의 대통령의 재가나 승인 혹은 묵인은 대통령이 정상적인 국정을 수행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라야 하는 것이지 대통령 자신이 내란행위를 한 자들에 의해 정상적인 권능행사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내려진 것을 최고통수권자의 승인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대통령 최규하마저도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내란죄를 저지른 것이라면 모르되, 오로지 피고인들에 의하여 대통령 최규하의 적법한 권능행사가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을 내란죄로 인정하면서도 반란죄에 관한 한 피고인들의 위 일련의 행위에 대통령 최규하의 적법한 재가 또는 승인이 있었다고 한 다수의견은 납득하기 어렵다”

○ 대법원은 이미 피고인등이 12·12사태 이후 광주재진입사건에 이르는 일

련의 폭동행위를 단일한 내란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보았는데, 그렇다면 이때에 이루어진 군병력의 배치, 이동 등은 대통령의 재가나 승인 등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내란행위에 의해 대통령이 적정한 권능행사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으므로 반란죄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5. 이 사건 판결의 의의와 한계

(1)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할 수 있음

- 항소심에서 혁명과 쿠데타를 구별하고 있다. 자연법에 부합하는 내용의 헌법과 법률만이 정당성을 갖게 되는데, 자연법은 만고불변의 것이지만 그에 대한 인식은 인간 이성의 개화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그리하여 어떤 국가의 헌법 내지 기본적 법질서가 자연법에 어긋나는 부당한 것이라는 인식이 그 사회에 팽배하여 마침내 그 불일치를 힘에 의하여 극복하려는 급격한 투쟁이 전개될 때 이를 혁명이라고 한다. 이에 비해 쿠데타는 그 정부형태에 따라 권력이 1인에게서 다른 1인에게로, 또는 어느 집단에서 다른 집단으로 이전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한 변화가 정부 자체에 국한되고 전체 국민에 대한 영향은 최소한도로 제한된다는 특징이 있음
- 쿠데타 정권의 합법성과 쿠데타행위 자체의 범죄성의 문제는 구별하여야 할 것이다. 쿠데타정권이 전면적이든 부분적이든 합법성을 부여받는다 고 하여 쿠데타정권을 탄생시킨 반란 또는 내란의 범죄행위적 본질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성공한 쿠데타의 경우에도 쿠데타 행위 자체는 범죄로서 마땅히 처벌되어야 할 것임
- 법 이론적으로 당연히 성공한 쿠데타라도 처벌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실제 유죄의 재판을 통해 형벌을 집행할 수 있는냐는 결국 쿠데타세력을 압도할 수 있는 국민의 저항이 있을 때에만 가능할 것이다. 불법한 집권 세력에 대한 최후의 헌법수호기관으로서 국민의 저항권이 보장되어야 할 것임

(2)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를 국헌문란의 행위로 볼 수 있음

- 피고인들이 비상계엄을 확대시켜 중요국정에 관한 국무총리의 통할권과 국무회의의 의결권을 배제시킨 것은 국헌문란에 해당함
- 비상계엄의 전국확대 그 사실만으로도 국민에게 기본권이 제약될 수 있다는 위협을 주는 측면이 있고, 민간인인 국방부장관은 지역계엄실시와 관련하여 계엄사령관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지휘감독권을 잃게 되므로, 비상계엄의 전국확대조치가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에 해당함

(3) 시위진압행위가 국헌문란에 해당하여 내란죄가 될 수 있음

- 항소심은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은 주권자의 입장에 서서 헌법을 제정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가장 중요한 소임을 갖는 것이므로, 이러한 국민이 개인으로서의 지위를 넘어 집단이나 집단 유사의 결집을 이루어 헌법을 수호하는 역할을 일정한 시점에서 담당할 경우에는 이러한 국민의 결집을 적어도 그 기간 중에는 헌법기관에 준하여 보호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국민의 결집을 강압으로 분쇄한 행위는 헌법기관을 강압으로 분쇄한 것과 마찬가지로 국헌문란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여” 헌법수호기관으로서의 국민의 결집체에 헌법기관에 준하는 보호를 해주어야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다만 대법원은 헌법수호를 목적으로 이룬 시위국민들을 가리켜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이라 할 수는 없다고 하였으나, 광주시민들의 시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행위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고 밝히고 있고, 불법적인 정부가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시위군중에 대하여 병력을 동원하여 난폭하게 제지하는 행위는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명시한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명시적으로 저항권을 수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음

(4) 발포명령 및 발포책임자에 관하여

① 제1단계

- 대법원은 제1단계에서 발포명령여부 및 발포책임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발포에 수반된 살인행위도 내란죄에 흡수된 것으로 봄

☞5.21. 도청앞 집단발포에는 상부의 발포령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상부의 발포명령자는 전두환, 정호용, 제11공수여단장(현장책임자)으로 볼 수 있으며, 그렇다면 모두에게 내란목적살인죄의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있음

② 제2단계

- 대법원은 제2단계에서의 발포령의 존재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음. 다만 제1심에서는 자위권발동 및 계엄훈령의 내용을 실질적인 발포명령으로 보았음

☞제1심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자위권보유천명에 발포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신군부의 수뇌부(전두환, 정호용), 20사단장, 3·7·11 공수여단장을 발포명령자로 볼 수 있으며, 그렇다면 이들에게도 내란목적살인죄의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있음

③ 제3단계

- 대법원은 광주재진입작전명령에 발포령이 사실상 포함된 것으로 봄. 발포에 따른 살인행위에 대해 전두환, 주영복, 이희성, 황영시, 정호용을 내란목적 살인죄의 간접정범으로 봄

☞위 5인을 내란목적살인죄의 간접정범으로 본 것은 그 외 신군부의 주요세력들에 대해 면책으로 귀결되어 부당함

☞위 5인을 포함하여 신군부의 주요세력들을 모두 내란목적살인죄의 공동정범으로 보아야 함

- 발포현장의 지휘관에 대한 책임이 문제됨

☞법원은 각 단계에서 발포현장의 책임자들의 법적책임은 문제삼지 않음 이는 군대의 특성상 상부의 발포명령을 거부할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전제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통일전 동독에서 탈출하려는 비무장민간인에게 총격을 가해 살해한 동독병사의 형사책임에 대해 통일후 독일법정에서는 이를 유죄로 선고하였음

☞ 현장에서 발포에 직접 가담한 현장지휘관 및 병사에게도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살인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또한 광주에서의 현장에 투입된 군인의 살상행위를 볼 때 시위진압적 차원, 시민들의 저항에 대한 방어적 차원을 넘어서 자행된 수많은 범죄 사례 등¹¹⁾에 대하여는 현장지휘권자는 물론 실행자(병사)의 형사책임도 물어야 함

○ 처벌받아야 할 사람이 기소된 16명에 불과한가?

-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참여한 사람 중에서 처벌되지 않은 사람 - 신군부의 수뇌부에서 직접 발포명령을 내린 사람(21일 당시 전남매일기자에 따르면 대치중이던 공수부대 지휘관은 상부에서 발포명령이 떨어졌는지 통신병에게 수시로 확인했고, 결국 오후 1시 발포명령이 떨어지자 집단발포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당시 발포명령을 내린 자는 누구인가?
- 당시 지휘권이 2원화되어 이희성 계엄사령관 - 소준열 전투병과교육사령관 - 정웅 31사단장으로 연결되는 정규라인과는 별개로 정호용 특전사령관 - 소준열 전투병과교육사령관 - 3,7,11공수여단장으로 연결되는 비상라인이 있었고, 이들 비상라인이 실제 발포명령과 관련되었음(정웅31사단장은 87년 5·18청문회에서 공수부대는 20일 오후부터는 독자행동을 하였고, 지휘라인을 벗어났다고 진술함)

11) 그 예로는 초기단계에서 구경하는 시민들을 무차별 난타한다든지, 건물 내까지 들어가 타격하고 끌고 간다든지, 여성에 대한 난폭한 성폭력일든지, 주택가상가·학원 등에 난입하여 잔학행위를 한다든지, 여관에 있는 부부를 끌고 간다든지 하는 잔혹한 살상, 구타, 체포행위를 들 수 있다. 한인섭, “국가폭력에 대한 법적 책임 및 피해회복 - 5.18 민주화운동의 법적 해결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 제43권 제2호, 209면, 2002.

- 전두환은 23일 오후 정호용을 통하여 소준열 전교사령관에게 친필메모를 보내 공수부대의 사기를 고려해 주고 희생을 무릎쓰고라도 사태를 조기에 수습해 줄 것을 당부하고, 그 무렵 황영시도 소준열에게 전화를 하여 희생이 따르더라도 사태를 조기에 수습해 줄 것을 요구하고, 이에 소준열이 김순현 전교사 전투발전부장에게 광주 재진입작전 계획인 상무충정계획을 마련하도록 지시함(1심재판기록 18쪽)
- 정호용은 26일 오전 전두환을 방문하여 재진입작전에 필요한 가발을 지원받고, 같은 날 14:00경 이회성을 방문하여 충격용 수류탄과 항공사진을 지원받고 같은 날 21:00경 이들 장비를 가지고 광주비행장에 도착, 예하 부대원을 격려함으로써 재진입작전 준비를 마침(1심재판기록 18쪽)
- 결국, 소준열 전투병과교육사령관과 3, 7, 11공수여단장은 직접적으로 발포명령을 전달받아 현장 지휘관과 병사들에게 지시한 자로서 책임을 져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에서 누락되어 처벌되지 않은 것은 문제로 남아 있음
- ☞ 국헌문란의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어려우나 직접 동족학살에 가담한 군인 → 21일과 27일 발포명령을 받아 직접 발포를 지시한 현장 장교와 발포를 행한 병사에 대해서는 국헌문란의 목적을 인정할 수 없어 내란목적살인죄를 적용할 수 없다면, 살인죄를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가능함
- 군인의 위법한 상관의 지시에 대한 거부행위가 기대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책임이 조각되지 않음
- 독일에서는 현재 아우슈비츠포로수용소의 경비를 담당했던 사람들까지 찾아내 전범으로 처벌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직접 발포행위 및 잔혹행위를 한 병사들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라 사려됨

(5) 정호용, 황영시의 내란목적살인죄에 관하여

- 검찰은 전두환, 이회성, 주영복, 정호용, 황영시에게 내란목적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신군부의 정권찬탈을 반대하는 광주시민들을 집권음모를 모르는 계엄군을 시켜 살상케했다는 논리였다. 재판부도 원칙적으로 검찰의 이같은 이론구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신군부의 5월 17일 비상계엄 확대조치 이후의 집권과정을 내란행위로, 5월 21일 자위권보유천명과 이후의 살상행위를 내란목적살인으로 모두 인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 재판부는 전두환, 주영복, 이회성에게만 내란목적살인죄를 인정하고, 정호용과 황영시는 자위권발동결정이나 광주재진입작전회의에 참가했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고, 정호용이 당시 공수부대의 ‘모체부대장’으로서 행정·군수지원과 지휘조연을 하는 등 진압작전에 개입한 것은 사실이지만, 공수부대를 실질적으로 지휘까지 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함
- 그런데 2,3심 재판부는 정호용과 황영시에 대하여 내란목적살인죄를 인정하였다. 정호용은 당시 특전사령관으로 7공수여단장을 역임했던 경력으로 실질적으로 공수부대를 지휘했고, ‘지휘권 2원화’논쟁을 불러일으켰던 인물로 실질적인 진압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26일 오전 전두환을 방문하여 재진입작전에 필요한 가발을 지원받고, 같은 날 14:00경 이회성을 방문하여 충격용 수류탄과 항공사진을 지원받고 같은 날 21:00경 이들 장비를 가지고 광주비행장에 도착, 예하 부대원을 격려함으로써 재진입작전 준비를 마쳤고(1심재판기록 18쪽), 황영시는 23일 오후 소준열에게 전화를 하여 희생이 따르더라도 사태를 조기에 수습해 줄 것을 요구하고, 이에 소준열이 김순현 전교사 전투발전부장에게 광주 재진입작전 계획인 상무충정계획을 마련하도록 지시함(1심재판기록 18쪽)
- 결국 황영시는 광주재진입작전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정호용도 측면에서 지원하고, 현장에서 직접 지휘하지 않았다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시위진압에 실질적으로 조력하였다면 내란목적 살인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한 항소심과 대법원의 판결은 정당함

(6) 12·12쿠데타와 관련한 박준병 피고인의 반란죄 무죄선고에 관하여

- 1, 2심 무죄판결, 3심에서 무죄의견 8명, 유죄의견 5명으로 무죄확정되었음. 박준병은 30경비단에 머물면서 합수부측을 위해 뚜렷하게 기여한 바가 없고, 병력동원 명령을 내리지도 않았으며, 다른 피고인과 일치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임
- 그러나 천경송, 지창권, 이용훈, 이임수, 송진훈 대법관의 반대의견에 의하면 박준병은 반란모의장소인 30경비단에 합류했고, 육군 정규 지휘부의 병력출동요청을 거부했으며, 자신의 육성명령 없이는 부대출동을 금지하라는 지시를 반복하였음이 인정되고, 돌발적인 쿠데타의 경우 지휘관이 어느 쪽에 서 있고, 누구의 명령을 듣는지 여부는 전체 쿠데타의 성사 여부에 심대한 영향을 주게 됨을 유의해야 할 것이므로 적법한 병력동원요청을 거부한 것은 반란에 대한 대응조치를 차단시켰고, 나머지 피고인들이 안심하고 반란을 추진할 수 있게 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박준병의 무죄부분에 대해서는 부작위와 작위가 뒤섞인 방법으로, 군사반란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6. 결론

- 성공한 쿠데타세력을 법정에 세워 사법부의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국민들이 전국적으로 집회, 시위 및 성명서발표 등 기소촉구운동을 벌인 결과라 할 것이다. 헌정질서파괴범죄로부터 헌정질서를 수호할 최종적인 주체는 주권자인 국민이라 할 것임
- 이 사건 판결은 첫째, 성공한 쿠데타도 그 자체의 범죄성으로 인해 처벌될 수 있다는 점, 둘째, 헌정질서파괴범죄에 대해서는 국가의 소추권행사에 장애 사유가 존재한 기간에는 그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는 점, 셋째, 비상계엄의 전국확대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시위진압행위가 국헌문란의 목적에 해당하고, 비상계엄 전국확대 및 시위진압의 폭동성이 인정되어 내란죄가 성립한다는 점, 넷째, 5월 27일 재진입작전 명령에는 발포명령이 들어 있는 것이 분명하여 내란죄와 별개로 내란목적살인죄가 성립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임

- 그러나 첫째, 이 사건 항소심은 국민이 주권자의 입장에 서서 헌법을 수호하는 가장 중요한 소임을 갖는 것이므로, 이러한 국민이 집단이나 집단 유사의 결집을 이루어 헌법을 수호하는 역할을 일정한 시점에서 담당할 경우에는 이러한 국민의 결집을 그 기간 중에는 헌법기관에 준하여 보호하여야 한다고 명시한 점에 의의가 있으나, 대법원이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이라 할 수는 없다고 한 점은 국민주권주의의 의미가 ‘국가기관으로서의 국민’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통치권력의 정당화원리로서 작동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헌법파괴행위를 막기 위한 시민의 집단에 헌법기관에 준하는 보호를 해주는 것은 이론적으로 어렵지 않다고 보여지고, 둘째, 발포행위와 관련하여 광주재진입작전에 한하여 내란목적 살인죄를 인정하였으나, 이전의 21일 집단발포와 자위권보유천명에는 발포명령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한 발포명령자에 대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고, 현장 지휘자와 병사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한계로 보여지고, 셋째, 5·18부분과 관련하여 군형법상 반란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12·12와 동일한 논리로 강압상태하의 재가의 적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박준병에 대하여 12·12부분과 관련하여 무죄를 선고한 부분은 작위 의무 있는 자의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하지 못한 점에서 한계가 있음
- 최근 5·18민중항쟁의 의미를 왜곡하는 일부 세력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사건 판결에서 사법부 재판관들이 15만장이 넘는 재판기록을 검토하여 내린 결론은 그 의미가 결코 가볍지 않다 할 것이다. 헌법질서 파괴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굳은 ‘헌법에의 의지와 실천’이 필요함

참고자료 < 12·12쿠데타와 5·18민중항쟁 사건경위 >

연월일	사건	비고
1979.10.15.	부산대생 가두시위 - 시민참여, 동아대생 동참	
1979.10.18.	- 부산지역에 비상계엄령선포 - 마산에서 경남대 중심의 학생, 시민의 연합시위	
1979.10.20.	마산, 창원지역에 위수령을 선포 - 공수부대투입과 무력진압	
1979.10.26.	박정희 -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해 시해	
1979.10.27.	비상계엄선포, 전두환은 계엄사 소속 합수본부부장으로 임명됨	
1979.11. 초순경	- 합수본부장 전두환이 10·26사건관련 직무유기혐의로 이재전 경호실차장구속 - 정승화육참총장이 석방시킴. - 전두환이 청와대사무실 수사중 9억원발견해서 이 중 6억원은 박근혜에게, 1억원은 수사비, 2억원은 정승화총장에게 가지고 왔다가 일을 마음대로 처리한다고 질책받음	
1979.11. 하순경	- 전두환이 정승화에게 부정축재자 처벌하고 그 재산을 몰수하면 국민적 영웅이 된다고 건의하자 정승화는 정치문제에 개입하고 싶지 않다고 거절 - 이후락이 세계불교대회참석차 스리랑카로 출국하려는 것을 전두환이 막았는데, 정승화가 출국시킴	
1979.12. 초순경	- 전두환이 월권행위를 하고 지휘체계를 문란시켜 한직으로 인사조치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았음(실제 정승화는 국방부장관 노재현에게 전두환의 인사조치를 건의함)	
1979.12.7.	전두환은 노태우와 보안사에서 만나 정승화총장의 연행조사문제를 논의	
1979.12.8.	전두환이 보안사 대공2과장 겸 합수부 수사1국장 이학봉중령에게 연행장소를 검토하라고 하여 연행장소를 총장공관으로 결정	
1979.12.12.	18:00 전두환은 경북궁 구내 수경사 제30경비단실에 집결 18:20 전두환은 이학봉과 함께 국무총리공관으로 가서 최규하에게 정승화 연행조사 재가 요구하였다가 국방부장관의 의견을 듣지 않고서는 재가할수 없다고 거절당함 18:30 전두환은 장태완, 정병욱, 김병기를 저녁식사에 초대 18:50 허삼수는 무장한 합수부수사관과 함께 총장공관에 도착 19:10 허삼수,우경윤은 정승화에게 대통령 재가를 받았다고 거짓 말하면서 김재규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에 대한 녹음진술을 위해 동행을 요구 19:30 총격전 끝에 정승화를 보안사 서빙고분실로 강제연행 21:30 전두환, 유학성, 황영시, 차규현, 백재택, 박희도는 최규하에게 집단으로 몰려가 정승화 연행조사 재가 요구	
1979.12.13.	03:50 국방부 청사 지하 1층 상황실 입구에서 노재현국방부장관을 보안사로 연행	
1980.4.14.	-전두환은 중앙정보부장서리를 겸임 -전두환은 보안사 참모들에게 군이 전면에 나서 정국을 장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지시 -비상계엄해제와 전두환퇴진을 요구하는 대학가의 시위를 강력히 제압하고, 비상계엄의 전국확대, 비상기구의 설치 및 국회해산을 시국수습방안으로 정리	

1980.5.4.	전두환은 중앙정보부장 안기에서 조태우, 유학성, 황영시, 이학봉, 차규현, 허화평, 허삼수, 정호용, 권정달과 위 시국수습방안에 따르기로 결의,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시국수습방안 지지결의 유도하기로 함	
1980.5.12.	국회 여야총무가 계엄해제 등 정치현안을 다루기 위한 임시국회 소집제 합의하고 신민당이 비상계엄해제결의안을 제출(5.20.임시국회가 개최되면 비상계엄해제가 본격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자, 계엄상황을 이용한 전국 장악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한 나머지 위 시국수습방안을 5월 17일 전격 실행하기로 함)	
1980.5.15.	- 서울역시위(전두환집권반대) -유학성은 육본참모총장실에서 이희성에게 시국수습방안을 설명하고 승낙받음 -전두환은 학생시위 배후조종자에 대해서는 국기문란자로, 부정부패행위자에 대해서는 권력형부추재자로 분류하여 검거하도록 지시	
1980.5.16.	13:00 전두환은 조문환 국방부차관을 통해 주영복 국방부장관에게 17일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개최하여 줄 것, 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회의 직전에 알려주겠다고 통보 13:30 전두환은 주영복에게 전화를 걸어 위 안건을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관철하여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줄 것을 요구	
1980.5.17.	-주영복은 전군주요지휘관회의 전에 전두환의 지시를 받은 권정달로부터 위 회의에서 다루어야 할 시국수습방안을 통보받고 승낙 -10:50 주영복은 국방부장관실에서 류중현 합동참모의장이 비상계엄확대, 국회해산, 비상기구설치를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회의안건에서 보류하기로 함 11:00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안종훈 육군군수사령관이 비상계엄확대는 국민의 합의에 의해 하여야 하는데 시기상조라며 반대 의견을 표명하였으나, 노태우, 정호용, 황영시 등이 적극적 의견을 표명하자, 주영복은 비상계엄확대를 전군주요지휘관들의 의견으로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결론을 내리고, 백지를 돌려 참석자들로부터 연서명을 받음 16:20 주영복 국방부장관은 위 연서명을 휴대하고 이희성 육참총장과 함께 신현확 국무총리를 찾아가 보고하자, 신현확은 비상기구설치와 국회해산은 반대의를 표명하고 비상계엄확대는 대통령이 결심할 사항이라고 함 17:10 주영복, 이희성은 최규하 대통령을 찾아가 위 전군주요지휘관회의사항을 이야기하자, 최규하는 신현확 국무총리와 숙고 19:00 최규하는 비상계엄확대에 대해서만 국무회의에서 논의해 볼 것을 지시하고, 전두환으로부터 소요배후조종 및 권력형부추재 혐의자에 대한 체포, 조사계획 보고를 받고 이에 대해 적법하고 신중하게 처리할 것을 당부함 21:42 중앙청에서 신현확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임시국무회의에서 주영복 국방부장관은 전국적으로 계엄법상 비상계엄선포가 가능	비상계엄전국확대는 5월20일 예정된 국회에서 계엄해제요구안이 여야합의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신군부는 정권찬탈목적으로 행한 것이다. 김준, "1980년의 정세발전과 대립구도", 5,18민중항쟁과 정치,역사,사회3, 5,18기념재단, 2007, 51-52면.

	<p>한 전쟁 또는 전쟁에 준할 사변과 적의 포위공격이라는 상황이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단순히 북한의 동태와 전국적으로 확대된 소요상태 등을 감안할 때 비상계엄 전국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설명을 한 후 반대 토론 없이 8분만에 의결시키고(당시 중앙청 외곽에 군병력과 장갑차를 무장배치하고, 내부에도 수경사 소속 헌병 250명을 무장시켜 배치하여 국무위원들에게 위력을 보임) 최규하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23:40경 이규현 문화공보부장관이 24:00를 기해 비상계엄 선포지역을 전국 일원으로 변경한다고 발표</p> <p>22:30 이희성은 전군에 소요진압부대 투입 작전명령을 하달하여 18일 02:30까지 광주소재 전남대학교를 비롯한 전국 92개 대학과 국회 및 신민당사와 공화당사, 언론기관, 공공기관을 포함한 136개 주요 보안목표에 엠16소총 등을 휴대한 계엄군 2만5천명을 배치완료하여 각 해당시설을 점거</p> <p>23:00 중앙정보부와 수경사 헌병단은 김대중, 문익환, 김동길, 인명진, 고은태, 이영희, 예춘호, 김록영을 체포</p> <p>23:00 이학봉의 지시를 받은 광주지구 보안부대가 시위주동자에 대한 예비검속을 실시하여 재야인사와 학생회 간부를 체포</p>	
1980.5.18.	<p>01:00 이희성 계엄사령관은 모든 정치활동의 중지, 정치목적의 옥내외집회 및 시위금지, 언론·출판·보도·방송의 사전검열, 각 대학의 휴교, 공공집회에서의 목적 이외의 선동적 발언과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불허, 포고령 위반자에 대한 영장 없는 체포, 구금,수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계엄포고 제10호를 발령</p> <p>01:10 특전사 7공수여단 소속 장교 94명, 사병 680명이 M16소총 등을 휴대하고 전남대학교와 조선대학교를 점거</p> <p>10:00 전남대학교 정문에 200명의 학생이 모여 공수부대원들의 학내 잔류 학생에 대한 구타행위를 비난하면서 비상계엄해제, 공수부대 물러가라는 시위를 하자, 공수부대원들이 진압봉으로 학생들의 어깨, 머리 등을 무차별 가격하고 체포</p> <p>10:30 학생 600명이 시내 중심지로 이동 집결하여 시위확산</p> <p>* 전두환, 이희성, 황영시, 정호용은 소준열 전교사령부장으로 부터 광주에서의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는 상황을 보고받고, 광주에서의 시위가 피고인들의 전국 장악에 상당한 장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 확산을 방지하고, 헌법기관인 대통령, 국회 및 행정부를 전복 또는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국회를 해산하고, 입법,사법,행정을 통제하는 비상기구의 설치,운영 등의 조치를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시위상황에 대한 언론보도를 통제하면서 강력한 진압이 예상되는 공수부대의 시내투입과 증파로 이를 조속히 제압하도록 함</p> <p>16:00 시위대와 시민들을 구분 없이 진압봉으로 머리를 가격, 체포된 시위대의 상의를 벗기고 광주시민 405명을 연행함과 동시에 80명에게 부상을 입힘</p>	
1980.5.19.	<p>- 피고인 전두환은 광주 보안부대의 건의에 따라 이희성 계엄사령관에게 시위 진압에 소극적인 윤흥정 전교사령관을 교체하도록 요구하고, 후임으로 소준열 육군종합행정학교장을 추천</p>	

	00:50 11공수여단 소속 장교 162명, 사병 1,038명이 M16소총 등을 휴대하고 광주에 증파되어, 장갑차의 선도로 위력시위 * 오후에 접어들면서 억압적이고 비인권적인 진압방식에 대해 시민들이 항거하면서 동참하게 된다(동아일보 1980.5.19.)	
1980.5.20.	-이희성은 M16소총을 휴대한 3공수여단 장교 255명, 사병 1,137명을 광주에 보내 시위진압에 추가투입하고, 오후에 공수부대의 과잉진압에 격분한 택시기사들이 중심이 되어 차량 시위가 전개되면서 트럭, 버스 등의 돌진 공격이 계속되자, 3,7,11공수여단 병력들이 최루탄과 진압봉을 사용하여 진압을 계속 * 시민들은 광주의 참상을 전혀 보도하지 않고 있었던 MBC와 KBS방송국을 불태웠다. <u>24:00 광주역 앞에서 3공수여단 12, 15세대 장교들이 시위대의 차량공격에 대응 발포하여 많은 광주시민들이 부상입음</u>	
1980.5.21.	12:00 전남대학교 앞에서 3공수여단 병력이 차량 공격 등을 시도한 시위대에게 발포 하여 성명불상 운전사 등이 총상으로 사망 <u>13:00 전남도청 앞에서 11공수여단 병력이 장갑차와 버스를 이용하여 돌진해 오는 시위대에게 발포를 시작, 이어 인근건물 옥상에 배치된 병력들이 시위대를 향하여 10여분간 집단적으로 발포하여 박민환 등이 총상으로 사망</u> <u>16:35 이희성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 주영복 국방부장관은 국방부장관실에서 회의를 열어 계엄군을 광주 외곽으로 전환 재배치하여 외곽을 봉쇄하고, 위수령 제1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자위권을 발동하기로 결정하면서 계엄군이 자위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광주시민들에게 경고하겠다는 의도하에 이를 언론을 통해 생중계로 발표하기로 결정</u> 19:30 이희성은 육본 기밀실에서 방송을 통하여 계엄군이 자위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천명하는 경고문을 발표 <u>20:30 이희성은 소준열 전교사령관을 통해 3,7,11공수여단과 20사단 등에 자위권행사를 지시, 계엄훈령 제11호로 각 예하부대에 자위권발동지시를 하달하여 이에 따라 그 무렵 광주외곽으로 재배치되고 있는 계엄군들에게 자위권발동이 고지되고 실탄 분배됨</u> 22:10 효천역 부근에서 20사단 61연대 2대대가 짐차의 선도하에 트럭, 버스 등 차량 6,7대에 탑승하고 목포쪽에서 오던 시위대와 교전하여 시위대 버스 2대를 전복 ** 자위권발동지시는 사실상 발포명령으로 받아들여져 광주외곽 봉쇄작전 및 광주재진입작전시 자위권의 행사 방법에 의거한 제한적인 발포가 아니라 민가에 대한 무차별사격, 검문소로 접근하는 시위대 탑승차량에 대하여 정차의 요구를 하지도 아니한 채 발포하는 등의 살상행위를 자행함	‘누가 먼저 총을 쏘았나’에 관하여 검찰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오후 1시에 계엄군의 집단발포가 있었고, 이후 최초로 무기가 탈취되었던 나주의 금성파출소에 시민들이 도착하여 무기를 탈취한 시간은 오후 2시 경이고, 화순 경찰서의 무기 고에서 무기를 탈취한 시간은 오후 3시30분 경이었다(광주일보 1995.12.21.)
1980.5.23.	전두환은 정호용을 통해 소준열 전교사령관에게 친필메모를 보내 공수부대의 사기를 고려해주고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사태를 조기에 수습해 줄 것을 당부	
1980.5.25.	04:00 이희성은 김*명 작전참모부장에게 광주 재진입작전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 12:15 전두환, 주영복, 이희성이 국방부내 육군회관에서 상무총정 작전을 같은 달 27. 00:01 이후 실시하기로 최종결정	

1980.5.26.	오전 정호용은 전두환을 방문하여 재진입작전에 필요한 가발을 지원받음 14:00 정호용은 이희성을 방문하여 총격용 수류탄과 항공사진을 지원받음 21:00 정호용은 이들 장비를 가지고 광주비행장에 도착 23:00 공수여단 특공조에 의한 침투작전 실시	
1980.5.27.	04:00 3공수여단 특공조 11대대 1지역대 장교 13명, 사병 66명은 전남도청 후문에 도착, 무차별총격 05:21 전남도청을 점령 06:20 여자기독교청년회건물을 총격전 끝에 점령	
1980.5.31.	전두환 -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으로 근무	
1980.8.16.	최규하 - 대통령 사임	
1980.8.27.	전두환 -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제11대 대통령에 선출	
1980.9.1.	전두환 - 제11대 대통령 취임	
1981.1.24.	비상계엄해제	
1981.2.25.	전두환 - 개정헌법에 따라 대통령선거인단에 의해 제12대 대통령에 선출	
1981.3.3.	전두환 - 제12대 대통령 취임	

위 사건 경위는 기본적으로 판결문상 범죄사실을 기초로 정리함

1980.5.4.	전두환은 중앙정보부장 안가에서 조태우, 유학성, 황영시, 이학봉, 차규현, 허화평, 허삼수, 정호용, 권정달과 위 시국수습방안에 따르기로 결의,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시국수습방안 지지결의 유도하기로 함	
1980.5.12.	국회 여야총무가 계엄해제 등 정치헌안을 다루기 위한 임시국회 소집제 합의하고 신민당이 비상계엄해제결의안을 제출(5.20.임시국회가 개최되면 비상계엄해제가 본격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자, 계엄상황을 이용한 전국 장악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한 나머지 위 시국수습방안을 5월 17일 전격 실행하기로 함)	
1980.5.15.	- 서울역시위(전두환집권반대) - 유학성은 육본참모총장실에서 이희성에게 시국수습방안을 설명하고 승낙받음 - 전두환은 학생시위 배후조종자에 대해서는 국기문란자로, 부정 부패행위자에 대해서는 권력형부추재자로 분류하여 검거하도록 지시	
1980.5.16.	13:00 전두환은 조문환 국방부차관을 통해 주영복 국방부장관에게 17일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개최하여 줄 것, 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회의 직전에 알려주겠다고 통보 13:30 전두환은 주영복에게 전화를 걸어 위 안건을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관철하여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줄 것을 요구	
1980.5.17.	- 주영복은 전군주요지휘관회의 전에 전두환의 지시를 받은 권정달로부터 위 회의에서 다루어야 할 시국수습방안을 통보받고 승낙 - 10:50 주영복은 국방부장관실에서 류중현 합동참모의장이 비상계엄확대, 국회해산, 비상기구설치를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논	비상계엄전국 확대는 5월20일 예정된 국회에서 계엄해제요구안이 여

	<p>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회의안건에서 보류하기로 함</p> <p>11:00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안중훈 육군군수사령관이 비상계엄확대는 국민의 합의에 의해 하여야 하는데 시기상조라며 반대 의견을 표명하였으나, 노태우, 정호용, 황영시 등이 적극적 의견을 표명하자, 주영복은 비상계엄확대를 전군주요지휘관들의 의견으로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결론을 내리고, 백지를 돌려 참석자들로부터 연서명을 받음</p> <p>16:20 주영복 국방장관은 위 연서명을 휴대하고 이희성 육참총장과 함께 신현확 국무총리를 찾아가 보고하자, 신현확은 비상기구 설치와 국회해산은 반대의를 표명하고 비상계엄확대는 대통령이 결심할 사항이라고 함</p> <p>17:10 주영복, 이희성은 최규하 대통령을 찾아가 위 전군주요지휘관회의사항을 이야기하자, 최규하는 신현확 국무총리와 숙고</p> <p>19:00 최규하는 비상계엄확대에 대해서만 국무회의에서 논의해 볼 것을 지시하고, 전두환으로부터 소요배후조종 및 권력형부정축재 혐의자에 대한 체포, 조사계획 보고를 받고 이에 대해 적법하고 신중하게 처리할 것을 당부함</p> <p>21:42 중앙청에서 신현확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임시국무회의에서 주영복 국방부장관은 전국적으로 계엄법상 비상계엄선포가 가능한 전쟁 또는 전쟁에 준할 사변과 적의 포위공격이라는 상황이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단순히 북한의 동태와 전국적으로 확대된 소요상태 등을 감안할 때 비상계엄 전국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설명을 한 후 반대 토론 없이 8분만에 의결시키고(당시 중앙청 외곽에 군병력과 장갑차를 무장배치하고, 내부에도 수경사 소속 헌병 250명을 무장시켜 배치하여 국무위원들에게 위력을 보임) 최규하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23:40경 이규현 문화공보부장관이 24:00를 기해 비상계엄 선포지역을 전국 일원으로 변경한다고 발표</p> <p>22:30 이희성은 전군에 소요진압부대 투입 작전명령을 하달하여 18일 02:30까지 광주소재 전남대학교를 비롯한 전국 92개 대학과 국회 및 신민당사와 공화당사, 언론기관, 공공기관을 포함한 136개 주요 보안목표에 엠16소총 등을 휴대한 계엄군 2만5천명을 배치완료하여 각 해당시설을 점거</p> <p>23:00 중앙정보부와 수경사 헌병단은 김대중, 문익환, 김동길, 인명진, 고은테, 이영희, 예춘호, 김록영을 체포</p> <p>23:00 이학봉의 지시를 받은 광주지구 보안부대가 시위주동자에 대한 예비검속을 실시하여 재야인사와 학생회 간부를 체포</p>	<p>야합의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신군부는 정권 찬탈 목적으로 행한 것이다. 김준, “1980년의 정세발전과 대립구도”, 5,18민중항쟁과 정치,역사,사회3, 5,18기념재단, 2007, 51-52면.</p>
<p>1980.5.18.</p>	<p>01:00 이희성 계엄사령관은 모든 정치활동의 중지, 정치목적의 옥내외집회 및 시위금지, 언론·출판·보도·방송의 사전검열, 각 대학의 휴교, 공공집회에서의 목적 이외의 선동적 발언과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불허, 포고령 위반자에 대한 영장 없는 체포, 구금,수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계엄포고 제10호를 발령</p> <p>01:10 특전사 7공수여단 소속 장교 94명, 사병 680명이 M16소총 등을 휴대하고 전남대학교와 조선대학교를 점거</p>	

	<p>10:00 전남대학교 정문에 200명의 학생이 모여 공수부대원들의 학내 잔류 학생에 대한 구타행위를 비난하면서 비상계엄해제, 공수부대 물러가라는 시위를 하자, 공수부대원들이 진압봉으로 학생들의 어깨, 머리 등을 무차별 가격하고 체포</p> <p>10:30 학생 600명이 시내 중심지로 이동 집결하여 시위 확산</p> <p>* 전두환, 이희성, 황영시, 정호용은 소준열 전교사령부장으로부터 광주에서의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는 상황을 보고받고, 광주에서의 시위가 피고인들의 전국 장악에 상당한 장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 확산을 방지하고, 헌법기관인 대통령, 국회 및 행정부를 전복 또는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국회를 해산하고, 입법, 사법, 행정을 통제하는 비상기구의 설치, 운영 등의 조치를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시위상황에 대한 언론보도를 통제하면서 강력한 진압이 예상되는 공수부대의 시내투입과 증파로 이를 조속히 제압하도록 함</p> <p>16:00 시위대와 시민들을 구분 없이 진압봉으로 머리를 가격, 체포된 시위대의 상의를 벗기고 광주시민 405명을 연행함과 동시에 80명에게 부상을 입힘</p>	
1980.5.19.	<p>- 피고인 전두환은 광주 보안부대의 건의에 따라 이희성 계엄사령관에게 시위 진압에 소극적인 윤희정 전교사령관을 교체하도록 요구하고, 후임으로 소준열 육군총합행정학교장을 추천</p> <p>00:50 11공수여단 소속 장교 162명, 사병 1,038명이 M16소총 등을 휴대하고 광주에 증파되어, 장갑차의 선도로 위력시위</p> <p>* 오후에 접어들면서 억압적이고 비인권적인 진압방식에 대해 시민들이 항거하면서 동참하게 된다(동아일보 1980.5.19.)</p>	
1980.5.20.	<p>-이희성은 M16소총을 휴대한 3공수여단 장교 255명, 사병 1,137명을 광주에 보내 시위진압에 추가투입하고, 오후에 공수부대의 과잉진압에 격분한 택시기사들이 중심이 되어 차량 시위가 전개되면서 트럭, 버스 등의 돌진 공격이 계속되자, 3,7,11공수여단 병력들이 최루탄과 진압봉을 사용하여 진압을 계속</p> <p>* 시민들은 광주의 참상을 전혀 보도하지 않고 있었던 MBC와 KBS방송국을 불태웠다.</p> <p>24:00 광주역 앞에서 3공수여단 12, 15대대 장교들이 시위대의 차량공격에 대응 발포하여 많은 광주시민들이 부상입음</p>	
1980.5.21.	<p>12:00 전남대학교 앞에서 3공수여단 병력이 차량 공격 등을 시도한 시위대에게 발포하여 성명불상 운전사 등이 총상으로 사망</p> <p>13:00 전남도청 앞에서 11공수여단 병력이 장갑차와 버스를 이용하여 돌진해 오는 시위대에게 발포를 시작, 이어 인근건물 옥상에 배치된 병력들이 시위대를 향하여 10여분간 집단적으로 발포하여 박민환 등이 총상으로 사망</p> <p>16:35 이희성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 주영복 국방부장관은 국방부장관실에서 회의를 열어 계엄군을 광주 외곽으로 전환 재배치하여 외곽을 봉쇄하고, 위수령 제1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자위권을 발동하기로 결정하면서 계엄군이 자위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광주시민들에게 경고하겠다는 의도하에 이를 언론을 통해 생중계로 발표하기로 결정</p> <p>19:30 이희성은 육본 기밀실에서 방송을 통하여 계엄군이 자위권</p>	<p>‘누가 먼저 총을 쏘았나’에 관하여 검찰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오후 1시에 계엄군의 집단발포가 있었고, 이후 최초로 무기가 탈취되었던 나주의 금성파출소에 시민들이 도착하여 무기</p>

	<p>을 보유하고 있음을 천명하는 경고문을 발표</p> <p>20:30 이희성은 소준열 전교사령관을 통해 3,7,11공수여단과 20사단 등에 자위권행사를 지시, 계엄훈령 제11호로 각 예하부대에 자위권발동지시를 하달하여 이에 따라 그 무렵 광주외곽으로 재배치되고 있는 계엄군들에게 자위권발동이 고지되고 실탄 분배됨</p> <p>22:10 효천역 부근에서 20사단 61연대 2대대가 짐차의 선도하에 트럭, 버스 등 차량 6,7대에 탑승하고 목포쪽에서 오던 시위대와 교전하여 시위대 버스 2대를 전복</p> <p>** 자위권발동지시는 사실상 발표명령으로 받아들여져 광주외곽 봉쇄작전 및 광주재진입작전시 자위권의 행사 방법에 의거한 제한적인 발표가 아니라 민가에 대한 무차별사격, 검문소로 접근하는 시위대 탑승차량에 대하여 정차의 요구를 하지도 아니한 채 발표하는 등의 실상행위를 자행함</p>	<p>를 탈취한 시간은 오후 2시경이고, 화순경찰서의 무기고에서 무기를 탈취한 시간은 오후 3시30분경이었다(광주 일 보 1995.12.21.)</p>
1980.5.23.	전두환은 정호용을 통해 소준열 전교사령관에게 친필메모를 보내 공수부대의 사기를 고려해주고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사태를 조기에 수습해 줄 것을 당부	
1980.5.25.	04:00 이희성은 김*명 작전참모부장에게 광주 재진입작전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 12:15 전두환, 주영복, 이희성이 국방부내 육군회관에서 상무총정 작전을 같은 달 27. 00:01 이후 실시하기로 최종결정	
1980.5.26.	오전 정호용은 전두환을 방문하여 재진입작전에 필요한 가발을 지원받음 14:00 정호용은 이희성을 방문하여 총격용 수류탄과 항공사진을 지원받음 21:00 정호용은 이들 장비를 가지고 광주비행장에 도착 23:00 공수여단 특공조에 의한 침투작전 실시	
1980.5.27.	04:00 3공수여단 특공조 11대대 1지역대 장교 13명, 사병 66명은 전남도청 후문에 도착, 무차별총격 05:21 전남도청을 점령 06:20 여자기독교청년회건물을 총격전 끝에 점령	
1980.5.31.	전두환 -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으로 근무	
1980.8.16.	최규하 - 대통령 사임	
1980.8.27.	전두환 -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제11대 대통령에 선출	
1980.9.1.	전두환 - 제11대 대통령 취임	
1981.1.24.	비상계엄해제	
1981.2.25.	전두환 - 개정헌법에 따라 대통령선거인단에 의해 제12대 대통령에 선출	
1981.3.3.	전두환 - 제12대 대통령 취임	

※ 위 사건경위는 기본적으로 판결문상 범죄사실을 기초로 정리함



발표 2

‘님을 위한 행진곡’을 위하여

정근식 (서울대 사회학과)

‘임을 위한 행진곡’을 위하여

정근식 (서울대 사회학과)

1. 문제의 배경
2. ‘임을 위한 행진곡’의 탄생과 1980년대 민주화운동
3. 5.18 민주화운동의 제도적 인정과 기념
4. 도전과 과제들

1. 문제의 배경

2010년 5·18 제30주년 기념식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방아타령 연주로 교체하려는 시도 때문에 파행이 된 이래, 2013년과 2014년 2년간 연속적으로 5.18 기념행사가 유사한 이유로 파행을 겪었다. 특히 2013년 5월 초, 5.18의 제33주년 기념식에서 관행처럼 불러지던 이 노래를 제창하지 않기로 국가보훈처가 발표하면서 이 문제는 커다란 사회적 쟁점이 되었다. 이 제33주년 기념식은 새로 출범한 박근혜 정부에서 이루어지는 최초의 기념식이었고, 또 대통령이 5년만에 기념식에 참석했지만, 광주 지역사회는 국가보훈처가 이 노래를 제창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여 5.18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모처럼 찾아온 사회통합과 화합의 계기를 상실한 셈이었다.

2013년 6월 27일,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민주화운동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재석의원 200명 중 찬성 158명, 반대 13명, 기권 29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이 결의안에도 불구하고, 이 노래는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며, 2014년 5·18 민주화운동 34주년 기념식도 마찬가지로 파행을 겪었다.

많은 사람들이 언급했지만, 1997년, 5.18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래 관행 또는 불문율로 기념식에서 연주되거나 제창되던 노래가 왜 2010년 이후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임을 위한 행진곡’을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여론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국회에서 기념곡 지정을 결의까지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임을 위한 행진곡’은 오랫동안 1980년대 대표적인 사회운동, 특히 광주민주항쟁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여 한국사회에 정의를 실현하려는 민주화운동의 산물이자 이를 이끌고 간 문화운동의 핵심적 텍스트로 간주되어 왔다. 특히 1987년 민주주의로의 이행이후, 또는 1998년의 선거에 의한 수평적 정권교체로 민주주의가 공고하게 된 이후, 한국의 민주화운동의 성과에 경의를 표하고 이를 배우려는 아시아의 여러 국가에서는 이 노래를 한국의 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문화적 유산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 노래는 일종의 사회운동 영역의 한류의 원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05년을 전후하여 발생한 역사수정주의, 흔히 뉴라이트운동으로 불리는 흐름이 형성되고, 여기로부터 벗어난 일부 극단적 우파들이 1980년의 광주민주화운동을 지역주의로 폄하하고, 급기야 종북주의와 연결시키면서, 한국의 민주화운동이 거둔 성과와 민주주의적 가치에 대한 사회문화적 합의를 깨트렸으며, 이것이 5.18 기념식에 영향을 미쳐 이를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발생한 것이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원래 1980년 5월 전남도청에서 희생된 시민군지도자 윤상원과 1978년 12월에 사망한 박기순의 영혼결혼식에 바쳐진 추모 헌정가이지만, 그 노래가 가진 역사적 상

징성 때문에 1987년 6월항쟁이나 1995년 광주특별법 제정까지 민주화운동을 이끌어가는 상징적 노래였으며, 1997년 5.18이 국가기념일이 된 후에는 한국 민주주의의 승리를 기억하는 의례적인 노래로 자리잡았다. 따라서 이 노래에 관한 논의를 체계적으로 진행하려면, 5월 문화운동과 5.18 의례의 발전과정을 이해하고, 이 노래의 탄생배경과 대중화의 과정, 그리고 의례음악으로의 전환과정을 살펴야 한다.

지금까지 이 노래를 포함하여 5월 노래운동과 의례음악에 관한 연구 중에서 가장 체계적인 것은 필자 등이 펴낸 <항쟁의 기억과 문화적 재현>(선인, 2006)에 실려 있는 정유하의 '5.18 의례음악의 변화'이다. 정유하는 5.18항쟁의 음악적 형상화에 관한 연구와 함께, 이 글에서 5.18 의례음악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과 '오월의 노래 2'가 민중가요에서 의례음악이 된 이유를 자세히 분석하였다.

이 글에서 필자는 그의 연구에 부분적으로 의존하면서, '임을 위한 행진곡'의 사회사적 분석과 함께 5.18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게 된 이유, 그리고 이 노래에 관한 최근의 논란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임을 위한 행진곡'에 대한 근거 없는 폄훼가 없었다면, 굳이 그것을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하지 않고, 5.18 행사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었을텐데, 근거 없는 폄훼 때문에 이를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해야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이런 요구의 정당성을 확인한다는 것은, 한류를 통해 세계에 문화적 역동성과 창의성을 과시하고 있는 한국에 어울리지 않는 시대착오적인 현상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2. '임을 위한 행진곡'의 탄생과 1980년대 민주화운동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임을 위한 행진곡'은 1982년 2월 20일 광주 망월동 묘역에서 열린 윤상원과 박기순의 영혼결혼식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것이 만들어진 시기는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의 엇갈리는 기억 때문에 정확하지 않다. 이 노래를 부른 오정묵은 이 해 가스로 기억하고, 또 이 곡의 녹음에 참여했던 김선출은 1982년 6월로 기억한다. 이 노래를 작곡한 김종률은 2013년에 이루어진 증언에서 1982년 4-5월경에 당시 광주 운암동에서 생활하고 있던 황석영이 놀이패 '광대'회원들과 문화운동에 관심이 있던 몇몇 학생들을 불러 이 영혼결혼식에 참석을 못했으니 노래극을 만들어 헌정하자는 제안을 했고, 얼마 후에 이들이 모여 녹음을 했다고 한다. 노래극의 제목은 '넋풀이'였고 부제는 '빛의 결혼식'이었다.

이 노래극의 주인공은 윤상원과 박기순이다. 윤상원은 196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 대변인이자 실질적인 지도자였다. 그는 시민군 대변인으로 광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을 외신기자들을 통해 세계에 전하였다. 그의 통역은 오늘날 연세대 의대가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린튼이 맡았다. 윤상원은 1980년 5월 26일 밤, 계엄군의 무력 진압이 임박한 것을 알고, 전남도청에 있는 젊은이들 중에서 어린 학생들이나 여학생들에게 귀가를 종용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민주주의를 찾기 위해 죄 없는 수많은 광주 시민들이 피를 흘리는 모든 과정을 너희는 지켜봤다. 이제 집에 가라. 이 항쟁을 잊지 말고 후세에 전해라. 오늘 우리는 패배하지만 내일의 역사는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 것이다." 그날 시민군 활동을 했던 상당수의 시민들과 학생들이 도청을 나와 피신했다. 윤상원은 끝까지 도청에 남아 있다 27일 새벽 계엄군의 총에 눈을 감았다.

윤상원의 죽음은 그의 예언대로 광주의 시민들에게 커다란 부채감으로 작용하여 민주주의를 위한 증언을 하도록 만들었다. 광주 시민들의 희생은 동일한 정치공동체의 소속하고 있다고 느끼는 광주 외부의 시민들에게 도덕적 부채감을 주었으며, 이것이 민주주의의 회복과 사회정

의를 기원하던 사람들을 추동하는 에너지가 되었다.

박기순은 1978년, 전남대 교육지표 사건에 관여한 인물이다. 이 사건은 1978년 6월 27일 당시 전남대 송기숙, 명노근 교수를 비롯한 교수 11명이 교육 민주화를 주장하는 '우리의 교육 지표' 성명서를 발표하고, 여기에 참여한 교수 전원이 중앙정보부에 연행되고 전남대와 조선대 학생들이 6월 29일 교수들 석방과 민주화를 외치며 격렬하게 시위를 벌여 처벌을 받은 사건을 말한다. 원래는 서울의 성래운, 백낙청 교수등과 함께 발표하려고 했으나 계획이 누설되어 서울의 교수들은 빠지고, 전남대 교수들만이 발표에 참여하였다. 이들은 바로 중앙정보부에 연행됐고 이를 후 전남대생들은 교육지표 지지, 구속 교수 석방을 외치며 데모에 들어갔다. 이후 교수들은 구속 또는 해직됐고, 학생 30여명이 구속되고 제적·정학을 당했다. 전남대 학생 박기순도 여기에 참가했다가 무기정학 처분을 받았다. 그 후 박기순은 광주의 광천공단에서 노동자들을 위한 들불야학을 창설하여 활동했는데, 그 해 12월 불의의 사고로 숨졌다. 이 사건에 의해 피해를 받은 사람들은 사건 발생 35년만인 2013년 2월과 4월, 각각 광주지방법원에서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윤상원과 박기순의 인연은 이 들불야학에서 맺어졌다. 윤상원은 전남대를 졸업하고, 주택은행 서울 봉천동지점에 근무하고 있다가, 전남대 교육지표 사건의 전말을 듣고 고민 끝에 은행에 사표를 내고 광주에 돌아와 광천공단의 플라스틱 공장에 취업했다. 이때 박기순을 만났고 그의 권유로 들불야학 강학으로 참여했다. 박기순이 숨지자 윤상원은 무척 안타깝게 생각했다고 한다.

윤상원의 사망이후 들불야학에서 같이 활동했던 사람들의 이들에 대한 추모의 움직임이 생기고, 가족들이 동의하여 영혼결혼식을 1982년 2월 20일 망월동 묘역에서 거행하게 되었다. 이를 알게 된 황석영과 연극이나 음악에 관심을 가진 젊은 활동가들 10여명이 이 결혼식에 참여하지 못하여 미안한 마음을 담아 영혼을 위로하는 노래극을 만들게 되었다. 김종률의 증언에 따르면, 1982년 5월을 전후로 하여 이들은 황석영의 집에 모여 노래극을 만들었는데,¹⁾ 그것은 두 사람이 만나 같이 활동하고, 죽음을 통해 헤어지며 다시 만나 영혼결혼식을 올리며, 마지막으로 이들이 살아 있는 사람들에게 당부하는 내려티브로 구성되었다. 그 마지막 부분이 임을 위한 행진곡이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가사부터 만들어졌다. 이 가사는 황석영의 주도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논의를 통하여 확정된 것으로, 여러 시집들에서 적절한 것을 찾다가 백기완의 '뫼비나리'를 주목했다고 한다. 이 시는 백기완이 1980년 말 서대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을 때 지은 것으로, 이 시가 쓰여진 배경은 다음과 같다.

1979년 10.26사태가 일어난 후 민주화의 가능성이 모호한 상태에서 11월 24일 이른바 'YWCA 위장결혼식 사건'이 발생했다. 민주화를 희망하던 인사들이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한 대통령선출을 반대하고, 대통령직선제 개헌과 거국내각 구성을 요구하는 유인물을 살포하였다. 이 사건으로 백기완은 계엄사령부에 잡혀가 고문을 당하고 서대문형무소에 갇혀 있었다. 광주민주화운동의 실패로 인한 심한 절망감 속에서 그는 이를 이겨내기 위하여 '뫼비나리'라는 시를 썼다. 이 시의 원래의 제목은 '(젊은 남 녀의 촌꾼에게 띄우는) 뫼비나리'인데, 제목에서 제시되듯이 이 시는 이렇게 시작한다.

맨 첫 발 딱 한발 띠기에 목숨을 걸어라
목숨을 아니 걸면

1) 그는 한때 이 시기를 1981년 5월 19일이라고 증언했으나 최근에 이를 정정하였다.

천하 없는 촌꾼이라 해도
중심이 안 잡히나니
그 한발 띠기에 온몸의 무게를 실어라

이 시는 장시로 후반부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무너져 피에 젖은 대지 위엔
먼저 간 투사들의 분에 겨운 사연들이
이슬처럼 맺히고 어디선가 흐느끼는 소리 들리리니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 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싸움은 용감했어도 깃발은 찢어져
세월은 흘러가도
구비치는 강물은 안다.

벗이여 새 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갈대마저 일어나 소리치는 끝없는 함성
일어나라 일어나라
소리치는 피맺힌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산자여 따르라

이 시는 1981년 신군부정권의 엄혹한 시대에는 발표될 수 없었다. 병원에 이감된 백기완은 면회객들에게 이 시를 자주 암송해주었는데, 이것이 지하 유인물로 유포되었다.²⁾ 정확한 경위는 알 수 없으나 이 유인물을 황석영이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가사가 만들어졌다.

임을 위한 행진곡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 데 없고 깃발만 나부껴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2) 경향신문 1998. 4.13 23면

이 가사는 영혼결혼식을 하는 두 주인공이 살아남은 자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고, 이것은 '앞서서 나가니 산 자여 따르라'는 구절에 농축되어 있다. 두 사람이 '우리가 앞서서 나가니 산 자여 따르라'라고 부르는 마지막 구절에서 비장감은 최고조에 달한다. 원래 이 가사는 '앞서서 가나니'였다. 즉 두 영혼이 '우리가 앞서서 가니, 살아 있는 자들이여, 기운을 내어 뒤를 따르라'고 독려하고, 이를 통해 미래의 민주주의의 승리를 다짐하는 내용인 것이다. 김종률은 이 노래를 만들 때 '임'이 누구인가에 관해 논의한 적이 있는데, 한용운의 '님의 침묵'을 연상하면서, 좁게는 윤상원과 박기순을 지칭하지만, 넓게는 광주민주화운동에서 희생된 사람들,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해 살다가 돌아간 사람들을 지칭한다고 증언하였다.

가사가 확정된 후 작곡은 김종률의 몫이었다. 그는 전남대 재학시절이었던 1979년, MBC대학가요제에서 은상을 받은 바 있는 가수 겸 작곡가로 1982년 2월 전남대를 졸업하고 입대를 앞둔 상태였다. 그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악상에 따라 작곡을 했고, 이 작업이 끝난 후 오정목이 선창하고, 다른 사람들이 따라 부르는 방식으로 녹음을 하였다. 중간 중간의 팽과리는 김선출이 연주했고 노래의 후반부는 합창을 하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졌다. 오정목 역시 전남대 학생으로 후에 그는 광주 MBC의 프로듀서로 활동하였다.

이 노래극 테이프는 1박 2일의 시간을 소요하여 완성했다. 이들은 완성된 테이프를 1:1 방식의 수동식으로 복제하여 총 2000개의 테이프를 만들었고, 주로 대학의 기독교계 서클(동아리)을 통해 보급하였다. 이 노래는 불과 1년만에 전국적으로 불려지는 노래가 되었다. 무엇보다도 이 노래는 광주항쟁 직후의 패배감과 좌절감을 극복하고 민주화를 향한 투지와 민주주의의 승리를 약속해주는 치유제로 기능했기 때문이다. 민주화를 갈망하던 사람들에게 광주민주화운동은 '항쟁'이라기보다는 '대학살'로 다가왔다. 신군부의 진압작전은 인간세계에서는 볼 수 없는 잔인한 것으로, '만행'으로 간주되었으며, 시민들의 죽음은 충격을 넘어 좌절감을 안겨 주었다. 그들은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로서의 자괴감과 죄의식에 시달렸다. 항쟁 직후의 패배감과 좌절감은 198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까지 양심적인 학생과 시민들을 짓누르고 있을 정도로 엄청난 것이었다. 그런 그들에게 <임을 위한 행진곡>은 패배감과 자괴감을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향한 의지를 일으켜 세우는 원동력이었다. 이 때문에 '임을 위한 행진곡'은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을 밝힐 것을 요구하는 대학생들의 시위나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의 현장에서 가장 많이 불려지는 노래가 되었다.³⁾ 뿐만 아니라 죽은 자와 산 자를 연계하면서 이를 하나의 공동체로 통합시킨다는 점에서 작품성이 뛰어난 최고의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아마도 1980년대에 광주민주화운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면서 가장 널리 불려진 노래를 언급해야 한다면, 그것은 '임을 위한 행진곡'과 함께 '광주출정가'와 '오월의 노래 2'(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를 거론해야 할 것이다. 1980년대에 한국사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광주민중항쟁'의 진상규명이었고, 이를 기초로 한 민주화운동이었다. 또한 국가주도의 압축적 성장체제에서 무시된 생존권적 기본권의 보장 또한 중요한 사회적 과제였다. 이 시기에 학생들과 일부 극단적인 시민들은 희생된 자들을 추모하면서 분신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방식으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요구하였다. 진상규명을 통한 정의의 실현은 매우 광범위한 대중적 요구였으므로 이를 반영하는 노래들이 많이 만들어졌다.

1980년 5월, 열흘간의 광주민주화운동에서 결단의 시간은 두 차례가 있었다. 한번은 계엄군의 잔인한 진압에 맞서서 시민들이 무장투쟁으로 전환하여 이와 맞선 5월 20-21일의 시간이고,

3) '80년대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불려진 노래', 경향신문 1992. 2.23 11면

두 번째는 압도적인 화력을 앞세운 계엄군의 최후의 진압작전이 다가오던 5월 26일의 밤의 시간이었다. 양자 모두 목숨을 건 결단이었지만, 그 방향은 사뭇 달랐다. 전자가 최정운이 말했듯이 시민들의 연대에 기초한 절대공동체의 형성을 만들어낸 결단의 시간이었다면, 후자는 현존을 초월하여 역사의 시간으로 진입하는 절대고독의 시간이었다. 이 결단의 시간들에는 불안과 공포를 넘어설 수 있는 에너지가 필요했다. 이 결단과 고독을 매우는 노래가 광주출정가이다.

광주출정가(고규태 글, 정세현(범능) 곡)

동지들 모여서 함께 나가자
 무등산 정기가 우리에게 있다
 무엇이 두려우랴 출정하여라
 영원한 민주화 행진을 위해
 나가 나가 도청을 향해
 출정가를 힘차게 힘차게 부르세

이 노래는 노래운동을 정세현(1993년 출가하여 범능이 됨. 2013년 별세)이 작곡한 것으로, 1980년대에 집회나 시위를 시작할 때 가장 어울리는 것이었다.

이와 함께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불린 또 하나의 노래가 오월의 노래 2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이다.

오월의 노래 2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

꽃잎처럼 금남로에 뿌려진 너의 붉은 피
 두부처럼 잘리워진 어여쁜 너의 젓가슴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 우리 가슴에 붉은 피 솟네

왜 쏘았지 왜 찢렸지 트럭에 싣고 어딜 갔지
 망월동의 부릅뜬 눈 수천의 핏발 서려 있네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 우리 가슴에 붉은 피 솟네

산 자들아 동지들아 모여서 함께 나가자
 욕된 역사 투쟁없이 어떻게 헤쳐 나가랴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 우리 가슴에 붉은 피 솟네

(하락)

이 노래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이후 불리기 시작한 작사자 불명의 5.18 관련 민중가요 중 하나로 1980년대 5.18 관련 시위에서는 빠지지 않고 불린 곡이다. 이 곡의 멜로디는 1971년 미셸 폴나레프(Michel Polnareff)가 작곡한 샹송 'Qui A Tue Grand'maman(누가 할머니를 죽였는가)?'을 행진곡 풍으로 개작한 것이라고 한다. 이 노래는 표현의 현장성과 직접성, 그리고 물질성 때문에 매우 강렬한 메시지를 만들어냈다. 그러나 1988년 국회 청문회 이후 광주

민주화운동의 진상이 어느 정도 드러나면서 이 노래가 가진 호소력은 감소되었다. 이 두 노래와 ‘임을 위한 행진곡’을 비교해보면, 왜 이 노래가 시공을 초월하여 민주화를 갈망하는 시민들을 단결시키고 결의를 다지게 한 서사시가 된 것인가를 알 수 있다. 정유하는 ‘임을 위한 행진곡’의 생명력과 작품으로서의 우수성을 가사와 연주방식의 유연성에서 오는 의미의 복합적 생산능력에서 찾았다.

최근 ‘임을 위한 행진곡’ 논란에서 이 노래가 너무 전투적이어서 정부 주관 행사의 기념곡으로는 부적합하다는 견해가 제출되었고, 이에 대한 반론을 펴는 사람들은 자주 프랑스 국가인 ‘라 마르세예즈’를 제시하면서 이 주장이 이치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이 노래는 어떠한가?

Allons enfants de la Patrie,	가자 ! 조국의 아이들여
Le jour de gloire est arrivé !	영광의 날이 왔도다!
Contre nous de la tyrannie,	우리를 향해 폭정으로부터
L'étendard sanglant est levé,	피로 물든 창이 일어섰다.
L'étendard sanglant est levé,	피로 물든 창이 일어섰다.
Entendez-vous dans les campagnes	들리는가? 들판에서
Mugir ces féroces soldats ?	저 흉폭한 군인들이 질러대는 소리가
Ils viennent jusque dans vos bras	그들은 당신들의 품 안에까지
Égorger vos fils, vos compagnes !	당신들의 아이와 아내의 목을 따러 온다!

Aux armes, citoyens	무기를 들라, 시민들여
Formez vos bataillons	전투부대를 편성하라!
Marchons, marchons !	나가자! 나가자!
Qu'un sang impur	더러운 피가
Abreuve nos sillons !	우리의 밭고랑을 적시도록!

이 노래는 1792년 프랑스혁명에 간섭하는 오스트리아와 프리시아의 군대에 맞서 싸우기 위하여 모집한 의용군들이 파리를 지나면서 부른 군가로, 왕정복고 시기에 금지되었다가 1830년 7월혁명때 다시 불렸고, 1879년 프랑스 국가로 지정되었다. 이 노래의 가사는 ‘임을 위한 행진곡’보다 훨씬 더 전투적이고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노래 중에서는 ‘오월의 노래 2’에 더 가깝다. 프랑스 국가의 사례를 보면,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오랫동안 불려진 노래가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 공식적인 국가(기념곡)로 채택되었으며, 노래의 내용이 매우 전투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정치공동체 성원들을 단결시킬수 있다면, 국가(기념곡)으로 채택될 수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3. 5.18 민주화운동의 제도적 인정과 기념

1980년 5월 27일, 신군부의 지휘를 받는 계엄군에 의해 전남도청 주변에서 저항하던 시민군이 모두 사살되거나 체포되어 상황이 종료된 후, 계엄군은 도청 앞 광장에서 반동을 넣어 군가를 힘차게 불렀다. 이와는 달리 시인 김준태는 신문 지면을 통하여 ‘아아 광주여, 우리나라

의 십자가여'를 발표하면서 '절망 속의 부활'을 노래했고, 이른바 '시의 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항쟁 직후의 대중적 정서는 부활보다는 절망 쪽에 가까웠으며, 이는 항쟁 직후부터 시작된 진상규명을 요구하면서 시도된 분신자살로 나타난다. 항쟁에 참여하고 사건을 지켜본 광주 시민들은 망연자실 할 말을 잃고 있었다. 이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임을 위한 행진곡'은 시의 시대의 연장선상에서 노래의 시대를 열었다. 노래의 시대에는 분노와 함께 조금씩 부활의 희망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로부터 다시 1-2년이 지나면, 항쟁에 참여했거나 목격한 화가들이 '판화의 시대'를 열었다. 이 시기에 광주의 희생자들을 추모하거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집회는 모두 강력하게 억압되었으나 유족 중심의 추모제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흥미롭게도 정치적 탄압이 강할수록 임을 위한 행진곡이나 광주출정가, 오월의 노래 등은 더 많이 대중화되었다. 노래는 강력한 문화운동의 핵심적 요소였다.

1987년에 이르면, 광주민주화운동의 기억은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사진을 통해 되살아났다. 당시에 발생한 박종철 사건이나 이한열 사건은 광주민주화운동을 떠올리게 하였다. 이 시기에 광주민주화운동의 참상을 보여주는 사진들은 시나 노래, 판화 등에 비해 사건 자체의 진상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물로 간주되었다. 1987년 6월항쟁을 통하여 이루어진 절반의 민주주의로의 이행은 한편으로는 군부권위주의의 지속을 낳았지만, 동시에 1980년의 기억을 청문회라는 장으로 불러오는 기회를 제공했다.

1988년은 민주주의로의 이행이 절반쯤 진행된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다. 1987년의 6월항쟁과 이어진 노동자 대투쟁은 한편으로 국민들의 기본권을 신장시키고 동시에 직선제에 의한 대통령선거를 보장하는 헌법 개정을 낳았다. 1987년 말의 대통령선거는 민주화를 요구하는 야당의 분열로 신군부 출신의 노태우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으나 1988년 봄에 이루어진 총선거에서는 야당이 승리하여 여소야대의 국회가 성립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에 대한 추모는 절반의 시민권을 획득하게 되었다. 국가적으로는 공인되지 않았으나 지방적으로는 공인되는 5.18 전야제가 도청앞 광장에서 열리기 시작했고, 여기에서 민주주의의 회복을 기원하는 노래들과 함께 '임을 위한 행진곡'이나 '오월의 노래' 등이 의례음악으로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5.18은 1988년에 가동된「민주화합추진위원회」를 거치면서 노태우 정부로부터 처음 「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명칭을 공식 인정받았다. 1988년 13대 국회에서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상규명에 나섰다. 광주청문회의 주요 쟁점은, 5·18민주화운동의 발생배경과 과잉진압여부, 집단발포 명령권자와 책임 소재, 미국의 책임 여부, 5·18민주화운동의 성격규정 등이었다. 흥미롭게도 광주청문회를 통해 이루어진 증언들은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에 한발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했으나 여전히 중요한 쟁점들은 그대로 해명되지 않고 남았다. 노태우 대통령 집권시기에 계엄군의 비인도적 국가폭력의 책임은 광주청문회보다는 5공청문회를 통해 '비리'혐의로 전두환 전 대통령을 백담사에 유배하는 조치로 귀결되었다. 그렇지만 국회청문회는 시민사회에서 증언의 시대를 열었다.

노태우대통령과 보수여당은 여소야대의 국회권력을 여대야소로 재구성하는 정치적 타협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이 1990년 초에 이루어진 3당합당이다. 3당합당을 통해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은 뒤로 미루어졌다. 다만,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실을 묻어둔 채 정치권력을 재편성하기 위해서는 타협이 필요했다. 이런 타협적 조치가 1990년 8월 6일 제정된 '5.18 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다. 당시 야당이었던 평화민주당은 '5.18 광주의희생자의 명예회복과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요구했지만 법사위에 상정되지도 않은 채 폐기되고 여당 단독으로 법안이 수정 통과되었다. 이 법률은 1980년 5월의 역사적 사건의 명칭을

‘광주사태’가 아닌 ‘광주민주화운동’으로 규정했다. ‘5.18’은 더 이상, ‘불순분자의 책동이나 유언비어에 폭동’이 아니라 전국적인 민주화 운동의 추세 속에서 전개된 광주지역 학생과 시민의 민주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규정되었다.

이 법률은 한국의 약 20년에 걸친 이행기 정의의 시대에 국가폭력에 의한 희생자들에게 보상이 이루어지는 출발점이었다. 그러나 이 법률은 민주유공자로서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치유’와 ‘화합’을 위한 보상을 겨냥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가졌으며, 실제로 5.18에 대한 진상규명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상황에서 보상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웠다.

지금 와서 회고해보면 1990년에서 1992년 사이의 2년간은 세계적인 탈냉전기였을 뿐 아니라 동아시아의 두 번째 탈냉전기였다. 한국은 러시아나 중국 등의 과거의 적대국들과 관계정상화를 이루었다. 지역적 탈냉전과 안보문제는 민주화의 조건이면서 동시에 제약요소였다. 1990년 3당합당은 1992년 대통령 선거에서의 승리를 보장했으나 광주문제는 정치적 핵심의제로 남아 있었다.

김영삼 대통령은 최초의 문민대통령임을 내세워 여러 개혁적 조치를 취했다. 1993년 5월 13일 김영삼대통령은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특별담화를 발표하여, 광주민주화운동에서의 책임자 처벌문제를 회피하면서 새로운 보상과 기념사업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는 5월 18일을 시(市)기념일로 제정하기를 희망했고, 5월 19일에는 5.18을 민주화운동기념일로 제정키로 여야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기념일 문제 또한 앞서의 보상문제처럼 보다 확실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없이 진전되기가 어려웠다.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의 유족들과 시민사회지도자들은 이른바 광주문제 해결 5원칙을 정립하였다. 그것은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배상, 명예회복, 기념사업 등이었다. 이것은 이행기 정의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나열한 것일 뿐 아니라 문제해결의 순서를 정한 절차적 원칙이기도 했다. 이 원칙은 당시 유엔에서 거론되는 테오 반 보벤의 이행기 정의의 원칙과 비슷한 시기에 정립된 것으로,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해결하는 보편적 원칙을 한국에서 정립했다는 의미를 지닌다.

김영삼 정권의 5·18 정책은 1994년 5월, 군부 지도자들에 대한 공소시효 문제가 되면서 심각한 도전을 받았다. 핵심 쟁점은 5원칙 중 책임자 처벌의 문제였다. 신군부 핵심지도자들의 처벌 문제는 1993년 7월 12-12군사쿠데타 피해자들에 의해 제기되었다. 1994년에 이르러 ‘5·18 진상규명과 광주항쟁 정신 계승 국민위원회’가 그들을 고발하고, 5월운동 당사자들도 그들을 고발하면서부터 본격화되었다. 1995년 7월 검찰은 이른바 신군부 세력들에게 공소시효 만료로 ‘5·18’과 관련하여 내란죄를 적용할수 없다는 최종 결정을 하였는데 이 결정은 역설적으로 꺼져가던 책임자 처벌운동의 불길을 지피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이에 대한 항의가 7월말부터 전국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결국 10월 국회에서 노태우 대통령의 비자금 폭로가 이루어지면서 김영삼 정권은 정치적 위기에 몰리고 상황은 반전되기 시작하였다. 김영삼 대통령은 5·18특별법 제정 지시를 하였고, 12월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구속이 이루어졌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특별법’은 12월 19일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정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법률(1995.12.21. 법률 5029호)로, 이 법의 입법 취지는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고 민주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행위에 대하여는 1993년 2월 24일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 것으로 본다”는 것이었고, “정부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훈을 받은 자에 대한 심사 결과 오로지 광주민주화운동을 진압

한 공로로 받은 상훈은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등을 치탈(褫奪)한다”는 것이었다. 이 밖에도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는 기념사업(제5조),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의 배상의제(賠償擬制)에 관한 규정 등 전문 7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이 법률은 5·18의 가해자 단죄와 피해자 명예회복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한국의 이행기 정의의 높은 수준을 보여주었다. 5.18 특별법에 따라 1997년 4월 12.12사건과 5.18 사건의 핵심 책임자들, 특히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이를 통해 5월운동은 목표를 거의 달성했으며, 남은 것은 명예회복과 기념사업이었다. 1996년 2월 1일 광주광역시에서 5.18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할 것을 요청했고, 광주시의회는 1996년 4월 30일 기념일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고, 5월 18일을 ‘5·18민중항쟁기념일’로 지정하는 광주시 조례를 제정하였다. 광주시는 이러한 의견을 수렴하여 1997년 2월 정부에 법정기념일로 제정해 줄 것을 건의하였고, 4월 14일 여·야 3당 총무간 합의를 거쳐 기념일제정이 건의되었다. 이에 따라 5월 9일 정부는 5·18민주화운동기념일을 제정하였으며, 5월 18일 정부 주관 아래 첫 기념일 행사를 5.18묘역에서 가졌다.

5.18 묘역은 김영삼대통령의 5·13대통령특별담화에 의한 것이다. 1994년 11월 1일 묘역조성 공사를 착공하여 1997년 5월 13일 완공했다. 2002년 1월 16일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 공포되었고, 2002년 7월 27일 국립묘지로 지정되었다(대통령령 제17668호).

5.18 민주화 운동이 1997년 국가 기념일로 제정된 뒤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기념식에 참석하여, 기념사를 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내내 기념식에 참석하여, 기념사를 했다. 2004년 5·18 기념식 때 노무현 대통령은 광주 민주화 운동 유족 등과 함께 광주 망월동 묘지에 참배했다. 그 때 노무현 대통령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합창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08년 기념식에 참석하여, 기념사를 했으나 이후 총리가 기념사를 대독했다. 기념식은 정부 관계자, 5·18 희생자 유족 및 시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민주화운동 희생자 영령에 대한 묵념·헌화, 경과보고 및 헌시낭송 등의 순으로 진행되며, 5·18민주항쟁 과정에 숨겨진 민주열사들을 추도하고, 그 숭고한 뜻을 되살려 민주주의 완성에 매진할 것을 다짐한다.

5.18이 이처럼 1990년 광주보상법, 1995년 광주특별법, 1997년 국가기념일 제정 등을 거쳐 제도화되는 과정은 한국사회의 지역적 통합과 민주주의가 진전되는 과정의 일부였다. 이를 통해 한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나라로 공인되었다. 5·18민주화운동은 2000년대 들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한국의 과거사 청산작업’을 위한 모델로 인용되었으며, 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국가에서 민주화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단체 및 사람들의 활발한 교류의 구심이 되어 아시아 여러 민주화에 기여하고 있다.

‘임을 위한 행진곡’도 이와 동일한 경로를 밟아서 5.18 희생자들에 추모곡이자 국민적인 기념곡으로 변화하였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1982년부터 1987년까지 민주화를 이끌어가는 저항적 운동가였다. 5.18 추모제 뿐 아니라 학생들이나 농민, 노동자들의 집회에서 빠지지 않고 불려졌다. 1988년 5.18 전야제가 합법적 지위를 획득하면서 이 노래는 추모의례의 공식적인 기념곡이 되기 시작하였다. 추모제, 기념식, 전야제, 거리음악제, 기념음악회는 이 노래의 연주나 제창을 당연한 의례의 하나로 간주했다. 제례에서는 헌주곡으로 별도의 창작곡이나 외국 추모곡과 함께 연주되었다.

1996년 최초로 민간합동 행사로 5.18기념식이 이루어졌을 때, 애국가가 불려지고, 임을 위한 행진곡이 마지막으로 합창되었다. 이 노래의 제도적 인정이 항상 순조로웠던 것은 아니지만,⁴⁾

4) 1996.5.22. 한겨레신문 열린음악회 관련 기사를 볼 것.

1997년 이후 공식적 의례음악으로 채택되었다. 정부주관하의 최초의 기념식이 열린 1997년에는 별도의 노래 제창이 없었는데, 1999년부터 입장음악과 헌시낭송이 포함되었고 한화 및 분향에서 오월의 노래²와 임을 위한 행진곡이 연주되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참석자들에 의해 합창되었다.

한국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재평가되고 민주주의로 이행하는 과정은 아시아와 세계의 관심사이기도 했다. 아시아의 국가 대부분은 한국의 성공적인 경제성장 뿐 아니라 한국의 민주화에 주목하였다. 특히 민주주의발전과 시민사회의 역동성, 과거사청산, 인권의식 등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는 한국의 문화운동도 포함된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한국의 민주화운동이 생산한 대표적인 문화적 성과이며, 아시아 민주주의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기념비적인 작품이다. 이 노래는 1980년대 후반부터 아시아 여러 나라에 알려지고 또 불려졌다.⁵⁾ 홍콩,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의 많은 나라에서 자국 언어로 번역되어 노동현장과 인권운동 현장에서 불리고 있다.⁶⁾ 이것은 1980년대 한국의 문화운동이 어떤 위치에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으로, 1990년대부터 본격화되는 한류의 선구적 위치를 차지한다.

4. 도전과 과제들

2010년은 5.18에 대한 극단적인 폄훼가 시작된 해이다. 일간베트스라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광주민중화운동이 근거없이 왜곡되기 시작했다. 5.18 민주화운동은 지역주의로 폄해되었으며, 북한과 연관지우는 터무니없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공교롭게도 이 시기는 서해에서 천안함 침몰사건이 발생하여 이의 원인을 둘러싸고 논란이 분분한 시기였다.

2013년에는 일부 종합편성 채널에서 북한 탈북자의 입을 빌어 북한군이 대거 광주에 들어와 전남도청을 점령했다는 허위사실을 여과 없이 방송하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하였고, '일베'는 '광주 희생자의 관'에 '홍어택배'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반인권적이고 패륜적인 행위를 하였다. 이들의 행위는 '5.18역사 쿠데타'로 표현되기도 하는 등, 강력한 저항과 분노에 직면하였다. 건전한 상식과 판단을 가진 보수 내부에서조차 강력한 비난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5.18에 대한 폄하는 지속되었으며, 이 상징적인 전투가 임을 위한 행진곡에 대한 비판이었다. 이것은 5.18 기념식에서의 배제논란을 낳았다. 이에 따라 역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행사의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급등하였다.

'임을 위한 행진곡' 논란은 제33주년 기념식을 파행으로 만들었다. 행사를 주관하는 국가 보훈처는 이런 파행의 주된 책임부서여서 이에 대한 비판이 지속되었다. 기념식의 주인공인 5.18 유족과 부상·구속자들은 기념식장이 아닌 망월동 묘역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대회'를 열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5.18 기념식에 참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념식의 의미는 반감되었다. 이에 따라 '5.18은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졌을 뿐 아니라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고 발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까지 생겨났다.

2013년 6월 국회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의 공식 기념곡 지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통과됐다. 국회의장도 국가보훈처에 국회의 뜻을 존중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 전국 시군구의회 의장단까지도 기념곡 지정을 요구했다. 말 그대로 여야 정치권 모두가 기념곡 지정을 인정하고 찬성하고 나선 것이다. 국민 다수가 '임을 위한 행진곡'의 공식 기념

5) 1989.6.21. 한겨레신문, '동아시아에서 불리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라는 기사를 볼 것.

6) 태국에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에 태국어로 가사를 붙여 '솔리다리티 Solidarity'라는 노래를 부르고 있다.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우리 안의 아시아 우리가 꿈꾸는 아시아』, 2008.

곡 지정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도 나왔다. 그러나 국가보훈처가 '임을 위한 행진곡 5·18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의 국회 통과 이후에도 기념곡 지정을 회피하면서 지정 반대를 위한 명분 축적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훈처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강기정 의원에게 제출한 '결의안 후속조치'자료에 따르면, 보훈처는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6월 27일 이후 관계부처 협의 외에 나라사랑 정책자문위원회 의견수렴과 전문가 분석 및 정책제안, 갈등관리 전문가 및 음악전문가 자문을 받았는데, 한결같이 부정적인 의견 일색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기념곡 지정 불가의 이유와 논리를 만들기 위한 '짜맞추기식' 의견수렴을 해 왔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가보훈처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기념곡 지정 추진사항'을 보고하면서, 여론수집에서 나타난 부정적인 의견으로, 특정단체가 애국가 대신 부른 노래, 엄숙해야 할 정부 기념식에서 주먹을 쥐고 흔들며 부르는 노래, 북한이 만든 영화 '님을 위한 교향시'의 배경 음악, 북한의 통일노래 100곡집에 수록된 노래, 작사자 등의 행적과 관련해 논란이 있는 노래, 가사에 나오는 '임'과 '새날'에 논란이 있는 노래, 국가유공자 단체의 반대, 기념곡으로 지정될 경우 국권분열의 위험 등을 들었다. 그러나 이런 부정적인 여론들은 근거나 없거나 사후에 발생한 사건을 가지고 사전에 일어난 일을 재단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 논리라고 할 수 있다.

5.18민주화운동 34주년 기념식 또한 5.18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1997년 이후 '최악의 행사'로 간주되었다. 세월호 참사의 영향도 있었지만, 정부가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기념곡 지정과 제창을 거부하면서 대통령도 참석하지 않고, 유족들도 참석하지 않았으며, '임을 위한 행진곡'도 불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5.18 단체와 유족들이 정부의 방침에 반발해 5.18 전야제 예산을 정부에 반납했으며 기념식에 일제히 참석하지 않았다. 이들은 따로 기념식도 열지 않고 대신 세월호 참사 안산 합동 분양소를 방문해 유족들을 위로했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폄하의 대극점에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라는 프로젝트가 있다. 5.18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은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대한민국 광주를 중심으로 전개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일련의 활동과 이후에 이 사건의 책임자처벌, 피해자 보상과 관련하여 기록되고 생산된 문건, 사진, 영상 등의 자료를 총칭한다. 등재명은 '인권기록유산-1980년 5월 18일 군사정권에 대항해 광주에서 일어난 민주항쟁 관련 기록물'이다.

2010년 1월 광주 지역 인사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추진위원회'가 같은 해 3월 등재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보완과 수정을 거쳐 2011년 5월 24일 영국 맨체스터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IAC)에서 등재를 권고하기로 결정하였고, 5월 25일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공식 발표하였다. 이 기록물은 ① 정부·전남도청·광주시청·광주경찰서 등 공공기관이 생산한 5·18 민주화운동 자료, ②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자료와 군사법기관 재판 자료, ③ 시민들이 생산한 성명서·선언문·취재수첩과 시민들의 일기, ④ 사진 자료와 흑백필름, ⑤ 시민들의 기록과 증언, ⑥ 피해자들의 병원 치료기록, ⑦ 국회의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회의록, ⑧ 국가의 피해자 보상 자료, ⑨ 미국의 5·18 관련 비밀해제 문서 등 총 9개 주제로 분류되어 있으며, 5·18 민주화운동의 발발과 진압 그리고 이후의 진상 규명과 보상 등의 과정을 편철 4271권 85만 8904페이지, 흑백필름과 사진 2017컷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에 담고 있다.

이 기록물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것은 5·18 민주화운동이 한국의 민주화는 물론 필리핀·태국·베트남 등 아시아 여러 나라의 민주화운동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으며, 민주화 과정에서

실시한 진상 규명과 피해자 보상 사례 등도 여러 나라에 좋은 선례가 되었다는 점 등이 높이 평가받았기 때문이다. 유네스코의 심사 과정에서 일부 극우 인사들이 5·18 민주화운동의 학살을 북한군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며 세계기록유산 등재 반대 청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임을 위한 행진곡’에 관한 논란의 과정에서, 5.18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과정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이나 ‘아 광주여 무등산이여’와 같은 문화적 기록물이 누락되었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인식되었다. 추진위는 ‘임을 위한 행진곡’ 악보 원본을 2015년 3월까지 유네스코에 추가 등재 신청서를 낼 계획이라고 한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이 되면 ‘인류 모두가 보호해야 할 기록유산’의 지위를 갖는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5.18 역사왜곡 시도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종합편성 채널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근거없는 비난과 폄훼행위에 대한 처벌, 그리고 5.18 민주화 운동의 진실을 알리는 콘텐츠 강화 등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시키고 국민대통합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다수의 여론은 아직도 우리 곁을 떠다니고 있다. 더구나 국제적인 국가위신의 추락 또한 중요한 문제이다. 1980년이후 세계 시민사회에서 쌓아 올린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가 깨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적 보편성을 획득한 인류적 자산인 ‘임을 위한 행진곡’은 어지간한 정치적 논란이나 풍파에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지만, 현재의 상황이 안타까운 것은 사실이다. “영혼이나마 부부되어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켜주소서”라는 기원⁷⁾이 새삼스럽다.

참고문헌

- 김선출, 『5월의 문화예술 : 기원에서 5.18기념 사업까지』, 샘물, 2001.
나간채 외, 『기억 투쟁과 문화운동의 전개』, 역사비평사, 2004
나간채 편, 『광주민중항쟁과 5월운동 연구』,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1997
노동은, 『민족음악의 이해』, 민족음악연구회, 1989
정근식-김종률, 「5.18의 망각과 기억: 임을 위한 행진곡을 중심으로」, 한인섭 외, 『한국현대사와 민주주의』, 경인문화사, 2014.
정유하, 「5.18의 레음악의 변화」, 정근식-나간채-박찬식 외, 『항쟁의 기억과 문화적 재현』, 선인, 2006
5.18 기념재단 엮음, 『5.18 민중항쟁과 문학 예술』, 5.18기념재단, 2006.

7) 민병욱, 5월 광주 낚풀이로 태어난 ‘임을 위한 행진곡’: 영혼이나마 부부되어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켜주소서, 네이버캐스트. 2013.5.29.



토론문

‘님을 위한 행진곡’의 상징정치

노진철 (경북대 사회학과, 교수)

‘님을 위한 행진곡’의 상징정치

노진철(경북대 사회학과)

1. 머리말

‘님을 위한 행진곡’이 정치적 갈등의 중심에 서게 된 배경은 국가 권력이 기념식장에서 부르는 노래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상징정치’에 있다. 박근혜 정권은 출범 이후 처음 맞이한 ‘2013년 5·18민중항쟁 33주년 기념식’을 이틀 앞두고 국가보훈처의 이름으로 ‘님을 위한 행진곡’을 더 이상 제창의 형태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였다. 국가보훈처는 ‘님을 위한 행진곡’을 두 가지 이유에서 부적합하다고 주장하였다. 첫째, ‘님을 위한 행진곡’이 5.18기념행사의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된 적이 없다는 것이고, 둘째, 일부 노동운동단체, 진보단체에서 민중의례 때 애국가 대신 불리는 노래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전자는 어떤 기념행사도 공식 기념곡을 법적으로 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그런 점에서 현 정권이 ‘님을 위한 행진곡’으로 호명한 상징정치는 “노동운동단체와 진보단체들이 민중의례 때 애국가 대신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기 때문에 정부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일어나 주먹을 쥐고 흔들며 노래를 부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으로 집약된다.

이러한 상징정치는 2013년 6월 27일 여당과 야당이 합의하여 강기정 의원(민주당) 등 56명이 제출한 「님을 위한 행진곡 5·18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것이나 ‘님을 위한 행진곡 5·18공식 기념곡 지정 서명운동’이 110만 인의 서명을 받아낸 것이 현 정권에서 아무런 정치적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는 데서도 드러난다. 현 정권의 시각에서는 5·18민중항쟁 34주년행사위원회가 기념식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후 정부의 무반향에 대해 기념식 불참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것은 예정된 수순이었다. 5·18민중항쟁 34주년행사위원회도 지난 해의 경험에 비추어 정부의 무반향은 예측가능한 것이었다. 그리고 현재에서 우리는 5·18민중항쟁 기념행사위원회가 내년에도 지난 2년 동안 했던 의례 행위를 또 다시 반복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우리가 던지는 질문은 5·18민중항쟁 기념행사위원회로

표상되는 5.18관련 3단체 및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현 정권이 주도하는 상징정치에 대항하여 새로운 상징을 이끌어낼 만한 정치적 소통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2.님을 위한 행진곡의 상징성

1982년을 기점으로 해서 1997년 광주민중항쟁이 공식적인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을 때까지 '님을 위한 행진곡'은 민주화 과정의 상징이자 불굴의 민중의식과 저항권의 상징이었다. 특히 1987년 6월항쟁과 7~9월의 노동자대투쟁, 그리고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은 국가권력에 대한 저항의 정당성을 광주항쟁으로 이어진 민주화운동의 기억에서 찾았다. 또한 1980년대 후반부터 등장한 주민운동, 여성운동, 도시공동체운동, 통일운동 등의 시민운동은 국가로부터 독립된 시민사회의 상을 국가권력에 대항했던 광주항쟁에서 찾았다. 따라서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 시민운동 진영의 집회와 대학가 시위에서는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과 민주열사에 대한 묵념으로 연결되는 '민중의례'가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으로 짜인 국민의례를 대체해 새로운 저항의 의례로서 자리를 잡았다. 민중의례는 현재의 민주주의가 광주 민중이 죽음으로 지켜내고자 한 것이고 그들의 희생으로 일구어 낸 것이며,¹⁾ 수많은 민주열사들의 넋과 바꾸어 되찾은 것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기리는 상징정치이었다. 그 결과 '님을 위한 행진곡'은 8,90년대를 통해 '민중의 애국가'로 호명되었다.

국가 폭력에 의한 시민학살과 인권탄압, 그에 대한 광주 민중의 저항은 행사되지 말았어야 할 직접적인 물리적 폭력이 행사되면서 생겨난 결과였다. 국가 폭력에 의한 시민학살과 인권탄압의 기억은 가해자든 희생자든 그 흔적이 그들의 삶 속에 남아있는 한 과거완료형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이다. 따라서 광주 시민들이 5·18민중항쟁 기념행사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 그런 맥락에서님을 위한 행진곡은 매년 5·18민중항쟁 기념행사에서 유족과 시민들 사이에서 제창되어 왔다. 즉, 1997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이 국가기념일로 승격되어 정부 주관으로

1) 5·18민중항쟁은 사망자 163명, 행방불명자 166명, 부상 뒤 숨진자 101명, 부상자 3,139명, 구속 및 구금 등의 기타 피해자 1,589명, 연고가 확인되지 않아 묘비명도 없는 희생자 5명 등 총 5,189명에 이르는 광주 민중의 희생의 역사이다.

첫 기념식을 열었을 때부터 2008년까지 정부주관 기념식 본행사 말미에 기념곡으로서 제창되었다.

하지만 보수 정권은 2009년부터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공식 식순에서 제외하고 식전 행사에 넣었으며, 2011년부터는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폐지하고 기념공연 시 합창단의 합창에 삽입하는 것으로 바꾸었다. 2013년 국가보훈처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대체할 별도의 5·18민중항쟁 공식 기념곡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5·18관련 3단체는 2010년부터 정부주관 기념식 참석을 거부하고 별도의 기념식을 여는 등 이에 반발하고 있다.

국가 권력이 개입하여 기념식의 틀을 재구성하는 것은 무엇을 기억하는가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잊는가, 그리고 어떻게 잊는가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즉, 과거의 집단적 경험 가운데 어떤 것을 특별히 기억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그 외의 다른 것들을 망각으로 몰아넣어야 하기 때문이다. 보수 세력이 5·18을 자유주의적 시민권을 회복하는 ‘민주화운동’으로 호명했다면, 진보세력은 급진적인 사회변혁운동의 일환인 ‘민중항쟁’으로 호명했다. 이런 맥락에서 국가보훈처의 ‘님을 위한 행진곡’ 배제 결정은 5·18민중항쟁 기념행사의 의미를 보수와 진보의 사회통합에 두는 것이 아니라 이념적 갈등의 장으로 간주하고 이를 행정명령으로 해결하려는 데 있음을 분명히 한다. 이에 대한 5·18관련 3단체 및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의 대응은 예측 가능한 수순을 쫓는 무기력함을 드러낸다. ‘5·18정신’이 새로운 상징을 여는 정치적 반향을 이끌어내지 못하며 권력 장악과 유지를 위한 보수와 진보 간 진부한 정치투쟁으로 재귀적으로 연결되어 재생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5·18정신’의 투쟁 대상이 이제는 더 이상 국가 권력이 아니라 망각의 위협이라는 것이다. 이 망각의 위협은 5·18기념행사가 34년째 반복되는 과정에서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이 망각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많은 학자들이 그동안 ‘5·18정신’에서 진보와 보수의 구분에서 벗어난 자유와 인권, 평화, 평등과 형제애, 국민주권, 시민권과 자기방어, 인간의 존엄성 등 근대 시민사회의 보편적 가치들을 찾는 재해석 작업을 시도했었다. 하지만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망각하는가는 현실의 정치적 소통에서 어떤 기억이 활성화되고 지속적으로 재생산되느냐에 달려있다. 과거의 지평과 현재의 지평을 융합하는 재기억은 과거의 다양한 경험들로부터 특정한 무엇을 현재로 불러들이는 회상을 다른 회상들에 계속 연결시키는 자기준거적인 기억작용이 된다. 이렇게 얻어진 자기준거적인 기억만이 기억이 이데올로기적으로 남

용될 수 있는 여러 위험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소통을 ‘호남의 한풀이’ 같은 지역 귀속성을 탈피한 보편적 가치로서 활성화할 수 있는 정당한 기억이 될 수 있다. ‘님을 위한 행진곡’이 이러한 보편적 가치를 담지하는 상징으로 거듭 나는 것은 5·18관련 단체들의 활동 및 정치적 위상 변화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

아직도 그들은 ‘5·18정신’이 없다면 오늘의 민주화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광주공로는 역사에 길이 남아야 한다고 믿는 것 같다. ‘님을 위한 행진곡’이 희생자들의 고통을 되새기는 데 국한되는 한 정치적 반향을 광범위하게 일으키기는 어렵다. 5·18 관련 단체들의 활동이 국가 폭력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 민주주의와 인권, 정의 등 근대 시민사회의 보편적 가치의 실천을 담아낸다면, 기념식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을 배제하는 보수 정권의 상징정치가 설 땅은 없을 것이다. ‘님을 위한 행진곡’이 홍콩, 중국, 대만, 캄보디아, 태국,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에서 현지어로 번안되어 불리어진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

3. 국민발안제의 도입

‘님을 위한 행진곡 5·18공식 기념곡 지정 서명운동’에서 110만 인이 지지를 하였는데도 아무런 정치적 반향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현행 민주주의가 제도상 결함이 있음을 말해준다. 선거권자들이 연대 서명을 통해 중요 법률이나 조례의 제·개정안, 헌법 개정안, 헌장 수정안 등을 행정부나 입법부에 요구할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 제도가 작동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한국은 1954년 제2차 개헌(사사오입 개헌)에서 헌법개정에 대하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50만 인 이상의 찬성으로 제안할 수 있게 하는 국민발안제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1972년 제7차 개헌(유신 개헌) 당시 박정희 정권이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민발안제를 폐지하였다. 스위스의 경우 국민발안제와 주민발안제를 채택하여 10만명의 선거권자의 탄원으로 연방헌법의 제·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요 법률 및 조례의 제·개정도 주(canton) 및 코뮌의 단위에까지 적용하고 있다. 일정수의 선거권자들이 연대 서명한 탄원이 제출되면, 그 제·개정안은 대략 2~3년 후에 국민(주민)투표에 회부된다. 이렇게 표결에 시간적 간격을 두는 것 특정 정치세력이 헌법 개정을 통해 자신들의 존재를 부각시키려는 시도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의회와 행정부는 발안된 안건에 대해

표결을 권유하거나 표결을 거부하는 식으로 공식 견해를 밝힐 수 있다. 이 견해들은 투표용지에 인쇄되어 선거권자들이 투표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특정 정당이 발안된 수정안에 대해 대체 법안을 제출하는 경우 그에 대해서도 투표하게 된다. 후자의 경우, 선거권자들은 우선 법률의 수정 여부에 대한 투표를 하고, 수정 요구가 우세한 때에 한해 발안된 수정안과 정당의 대체 법안 중 하나를 선택하는 투표를 한다. 시민 발안의 헌법 개정안은 국민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의 득표로 통과되며, 법률·조례의 제·개정도 과반수 이상을 득표해야 통과한다.

미국은 주민발안제를 콜롬비아 특별구를 포함한 조지아 주, 오리건 주, 콜로라도 주, 워싱턴 주, 캘리포니아 주, 매사추세츠 주, 알래스카 주 등 24개의 주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그 하위 단위인 지역과 시 정부에서도 보통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도 2003년 헌법의 개정과정에서 지방자치에 관한 조항(제72조)에 주민발안제를 도입하였다. 프랑스는 의회(collectivité territoriale)가 시민들의 발안을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주민투표에 부치는 제한적인 주민발안제를 시행하고 있다.

현 정부가 ‘님을 위한 행진곡’의 기념곡 지정 요구에 무반응인 것은 ‘님을 위한 행진곡’이 진보세력 사이에서 ‘민중의 애국가’로 호명될 정도로 저항의 강한 상징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년에 다시 기념곡 지정을 요구한다고 해서 정부의 보수적인 태도가 갑자기 바뀔 리가 만무하다. 게다가 내년에는 선거도 없기 때문에, 정부는 보수적인 정치 태도를 유지할 개연성이 훨씬 크다. 이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5.18관련 3단체 및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해마다 통과 의례처럼 ‘님을 위한 행진곡’의 기념곡 지정을 탄원하는 반복하는 것보다 국민발안제, 주민발안제 등 직접 민주주의를 재도입하는 헌법 개정의 상징정치를 주도해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인다.



토론문

5·18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 관련 토론문

김선화 (국회입법조사처, 박사)

5·18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 관련 토론문

김 선 화

(법학박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1.

여기서 대상으로 하는 판결은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즉,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반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에 관한 사건이다.

2.

이 판결은 군사쿠데타와 그 세력 및 그에 대한 광주시민 저항권 행사에 대한 진압에서 벌어진 살상 등에 대한 법적 평가가 일단락되는 의미로 생각되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민주화가 정착되는 중대한 법적 청산인 것으로 기대되었다.

이 판결이 있기까지, 심판은 역사에 맡기자는 정치적인 평가, 검찰의 기소유예결정과 공소권없음 결정, 성공한 쿠데타론, 이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발, 「5·18 민주화운동 등에관한특별법」,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별법」과 같은 특별법의 제정과 이에 대한 처분적 법률, 평등원리, 소급효 문제 등과 같은 무거운 법리논쟁 등 지난한 과정이 있었다. 그리고 드디어 군사쿠데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과정들은 가장 극단적이라고 할 헌법침해와 헌법수호, 주권자가 직접 나서서 저항권의 행사, 시민불복종 등과 같은 가장 극단적이고도 헌법철학적인 쟁점들을 보여주는 드라마 같은 헌법사건들이었다. 그리고 위의 대법원 판결로 법적인 평가가 일단락되고 민주주의가 제대로 진보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로부터 17년이 지난 지금, 이 헌법사건들이 우리 헌정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성찰해 볼 때가 되었다. 일련의 법적인 청산절차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쿠데타세력이 온존하고 있고 아직도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고 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역사적인 평가를 왜곡하는 발언이나 사건 등을 목도한다.

3.

이 판결은 우선, 그동안 대법원 판례에서 부정되어 온 저항권을 인정한 점에서 중대한 의의가 있다. 실정법상 인정해 오지 않았던 저항권이라는 개념을, 대법원이 인정한 최초의 판례로 볼 수 있다고 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항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평석도 있으나, 5·18 항쟁에 대해서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저항권에 대한 인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설혹 소위 성공한 쿠데타라 하더라도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헌법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폭력으로 권력을 장악한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4.

그러나, 많은 논문과 발제문에도 지적된 바와 같이 하급지휘관과 병사에 대해서 대법원이 기대불가능성을 들어 시위진압의 목적을 벗어난 과도한 구타, 살상, 성폭력 등의 죄책을 묻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 대법원이 보다 면밀하게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하여 그 죄책을 검토하지 않은 점은 인권의 최후의 보루라 할 사법부의 결정으로는 미진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전쟁 중에도 불가피하지 않은 인명침해나 구타, 성폭력 등에 대해서는 죄를 인정하는데, 시위진압에서 발생한 과도한 인권침해행위를 책임있는 범죄행위로 판단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 헌법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고의 헌법가치로 하고 있고, 국가기관은 이를 수호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러한 인권유린행위에 가담한 자들에 대해서는 그 행위성에 대해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음에도 하지 못한 점은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받을 수 있다.

5.

이 판결 이후에 금새 행해진 사면권행사의 문제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97년 판결이 난 이듬해인 98년 8월 15일에 유죄판결을 받은 인사들에 대해서 사면과 복권이 이루어졌다. 사면권 행사는 국민의 통합을 위한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고 판단이지만, 이러한 양민학살과 인권유린 및 헌정유린사범에 대해서 사면한다는 것은 사면권의 내재적 한계를 성찰하지 않은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해당자들은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무고한 시민의 인명을 살상하고도 실제로 수감기간이 2년 1개월 정도에 불과하였다. 인명살상을 수반한 헌정유린사범에 대해서 단호한 청산이 필요했음에도 정치적 고려가 우선되었으며 이것이 후세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이것은 이 사건에 대한 일련의 법적 평가에 대해서 그저 정치적인 사건으로 축소하는 효과를 낳는다. 실제로 2000년대 이후에 5·18민주화운동이 폭동이라거나 학살된 시민을 비하하는 표현이 공공연하게 나타나고, 북한지령에 의한 민중폭동이었던가거나 하는

식의 왜곡과 편협 문제는 이런 사면권 행사와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사면권자가 의도했던 화합이 오히려 갈등의 불씨를 계속 지피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그렇게 철저하게 홀로코스트와 인권유린에 대한 법적 평가와 역사적 청산을 해온 독일의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홀로코스트를 허구라고 왜곡하거나 신나찌당을 추종하는 등의 일이 절멸되지 않았다. 철저한 법적 단죄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청산은 어렵다. 다만, 독일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러한 역사청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여기에 비해서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 평가에 대한 합의조차도 깨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온정적인 법적 평가와 정치적 사면권 행사에 대해서 보다 근본적인 반성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것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기준을 세우는 일이 되는 것이다.

